

# 第145回國會 勞動委員會會議錄 第6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89年3月7日(火)

場 所 勞動委員會

### 議事日程

1. 勞動爭議調整法中改正法律案(李相洙議員外 70人 發議)
2. 勞動爭議調整法中改正法律案(鄭貞蕪·李仁濟·盧武鉉議員外 57人 發議)
3. 勞動爭議調整法中改正法律案(金炳龍議員外 34人 發議)
4.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李相洙議員外 70人 發議)
5.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李仁濟·盧武鉉·鄭貞蕪議員外 57人 發議)
6.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金炳龍議員外 34人 發議)
7. 勞動組合法中改正法律案(李相洙議員外 70人 發議)
8. 勞動組合法中改正法律案(李仁濟·盧武鉉·鄭貞蕪議員外 57人 發議)
9. 勞動組合法中改正法律案(金炳龍議員外 34人 發議)
10. 勞動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계속)(李相洙議員外 70人 發議)
11. 勞動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계속)(盧武鉉·李仁濟·鄭貞蕪議員外 57人 發議)
12. 勞動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계속)(金炳龍議員外 34人 發議)
13. 勞動關係法改正에 관한 請願(金東仁議員 紹介)
14. 長期勞使紛糾의 解決을 위 한 當事者의 意見 聽取의 件
15. 勞動部의 釜山港運勞動組合運營實態特別調查結果報告

### 審査된案件

1. 勞動爭議調整法中改正法律案(李相洙議員外 70人 發議)(계속)..... 1面
2. 勞動爭議調整法中改正法律案(鄭貞蕪·李仁濟·盧武鉉議員外 57人 發議)(계속)..... 1面
3. 勞動爭議調整法中改正法律案(金炳龍議員外 34人 發議)(계속)..... 2面
4.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李相洙議員外 70人 發議)(계속)..... 2面
5.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李仁濟·盧武鉉·鄭貞蕪議員外 57人 發議)(계속)..... 2面
6.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金炳龍議員外 34人 發議)(계속)..... 2面
7. 勞動部의 釜山港運勞動組合運營實態特別調查結果報告..... 11面
8. 勞動組合法中改正法律案(李相洙議員外 70人 發議)(계속)..... 26面
9. 勞動組合法中改正法律案(李仁濟·盧武鉉·鄭貞蕪議員外 57人 發議)(계속)..... 26面
10. 勞動組合法中改正法律案(金炳龍議員外 34人 發議)(계속)..... 26面
11. 勞動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李相洙議員外 70人 發議)(계속)..... 29面
12. 勞動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盧武鉉·李仁濟·鄭貞蕪議員外 57人 發議)(계속)..... 29面
13. 勞動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金炳龍議員外 34人 發議)(계속)..... 29面
14. 勞動關係法改正에 관한 請願(金東仁議員의 紹介로 提出)..... 31面
15. 長期勞使紛糾의 解決을 위 한 當事者의 意見 聽取의 件..... 32面

(10時59分 開議)

○委員長 金令培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6次 勞動委員會를 開議하겠읍니다.

1. 勞動爭議調整法中改正法律案(李相洙議員外 70人 發議)(계속)
2. 勞動爭議調整法中改正法律案(鄭貞蕪·李仁濟·盧武鉉議員外 57人 發議)(계속)

- 3. 勞動爭議調整法中改正法律案(金炳龍議員外 34人 發議)(계속)
- 4.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李相洙議員外 70人 發議)(계속)
- 5.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李仁濟·盧武鉉·鄭貞薰議員外 57人 發議)(계속)
- 6.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金炳龍議員外 34人 發議)(계속)

○委員長 金令培 議事日程 第1項 李相洙議員外 70인이 發議한 勞動爭議調整法中改正法律案 議事日程 第2項 鄭貞薰·李仁濟·盧武鉉議員外 57인이 發議한 勞動爭議調整法中改正法律案 議事日程 第3項 金炳龍議員外 34인이 發議한 勞動爭議調整法中改正法律案 議事日程 第4項 李相洙議員外 70인이 發議한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 議事日程 第5項 李仁濟·盧武鉉·鄭貞薰議員外 57인이 發議한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 議事日程 第6項 金炳龍議員外 34인이 發議한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 이상 6件을 일괄해서 上程하겠습니다.

法案審査小委員長이신 李相洙委員 나오셔서 小委員會의 審査結果를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小委員長 李相洙 勞動關係法案審査小委員長 李相洙委員입니다.

勞動爭議調整法中改正法律案 3件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 3件 以上 6件的 改正法律案에 대한 小委員會의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이들 6件的 改正法律案은 平和民主黨 統一民主黨 그리고 新民主共和黨에서 各 法律마다 1件씩 提案한 法案으로 當 小委員會에서는 1988年12月14日의 1次 小委員會에 이어 1989年2月부터 3月6日까지 12次的 小委員會를 開議하고 小委員 全員이 參席하여 政府關係官을 出席시킨 가운데 眞摯하게 各 法律마다 3個의 法案을 綜合審査한 結果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습니다.

먼저 勞動爭議調整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3件的 改正法律案 原案은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黨의 案을 綜合補完하여 그 代案을 提案하기로 合意하였습니다.

代案의 主要骨子を 말씀드리면 첫째 이 法의 目的을 勞動爭議의 合理的

보장을 위한 것으로 規定하였고 둘째 防衛產業體 從事 勤勞者의 爭議行爲를 公益事業體 從事 勤勞者의 爭議行爲에 準하도록 規定하였으며

셋째 第3者介入禁止 除外範圍에 勞動組合의 委任을 받은 辯護士 및 公認勞務士와 委員會의 證인을 얻은 者를 포함하였고

네째 職場閉鎖는 勞動組合의 爭議行爲가 있는 후 5日이 지나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 3件도 3黨의 案을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個의 改正案을 單一案으로 統合 補完한 代案을 提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代案의 主要骨子を 말씀드리면

첫째 勤勞基準法을 5人이상의 모든 事業 또는 事業場에 擴大 適用하고 4人이하의 경우에도 이 法의 一部를 適用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勤勞者를 즉시 解雇할 수 있는 勤勞者 歸責事由를 法律로써 明示하고 正當한 理由없는 解雇 등에 대한 救濟條項을 新設 하였습니다

셋째 退職金 災害補償金과 3個月分의 賃金을 使用者의 總財産에 대하여 優先적으로 辨濟하도록 하였고

네째 누구든지 勤勞者의 就業을 妨害할 目的으로 名簿作成 使用 및 通信禁止事項을 新設하였으며

다섯째 使用者의 歸責事由로 인한 休業手當을 平均賃金의 70%로 引上하였고

여섯째 基本勤勞時間을 適當 44時間으로 하였습니다

일곱째 有害·危險作業의 勤勞時間을 제한하고 地下作業의 人·出坑時間을 勤勞時間에 포함시켰고

여덟째 年次有給休暇日數를 上向調整하고 女子와 年少勤勞者의 夜間·休日勤勞는 勤勞者의 同意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女子勤勞者의 生理休暇 請求에 關係없이 주도록 하였고

열번째 罰金額을 現實化하였으며

열한번째 適當 基本勤勞時間 44時間에 대

한 經過規定을 두어 300人 미만의 事業 또는 事業場中 勞動部長官이 지정하는 業種에 대해서는 1991年6月30日까지 그 이외의 事業 또는 事業場에 대해서는 1990年9月30日까지는 適當 46時間을 適用토록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參照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췌록 當 小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대로 議決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令培 지금 小委員長의 報告內容은 議事日程 第1項 第2項 第3項의 勞動爭議調整法中改正法律案이 平和民主黨 統一民主黨 新民主共和黨 3黨에서 1件씩 提出되었고 議事日程 第4項 第5項 第6項의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 역시 前과 같은 3個 政黨에서 1件씩 提出되었습니다.

이 두가지 法律案의 改正案內容을 各各 統合 補完한 單一案을 마련하기 위해서 勞動爭議調整法과 勤勞基準法의 改正案 原案들을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件의 代案을 小委員會 全員의 合意로 이것은 4黨 全體의 合意를 의미합니다. 國會法 第49條의 규정에 의거 勞動委員會의 案으로 채택해 주도록 提案하여 왔습니다.

이 審査報告內容에 대해서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仁煥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小委員會에서 우리가 討論을 해왔음이다마는 최종으로 처리하는 것은 우선 다른 報告를 받고 그 처리는 우리 民正黨委員인 南載熙委員 李台燮委員 鄭宗澤委員이 中執委會會議때문에 빠져 있으니까 우선 그것은 上程한 것으로 해두고 우리 民正黨委員들이 다 참석했을때 처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上程된 두가지 法案은 與野 4黨이 완전히 合意한 法律案이기 때문에 民正黨 議席이 좀 비어 있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리를 하고 나머지 2個 法案은 民正黨委員이 나오신 다음에 할 수 있도록 勞動部의 報告를 받고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먼저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盧仁煥委員 小委會에서는 合意가 됐다고 하더라도 기기에 참석 안한 분의 質問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처리하자는 애기입니다.

○委員長 金令培 委員長으로서는 분명히 意思表示를 했습니다.

완전히 4黨間에 合意가 된 것이니까 단지 몇분이 아직 안오셨다고 해서 與野間에 완전히 合意된 것을 留保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 說得力이 없습니다.

○盧仁煥委員 아까 會議 시작하기 전에 제가 報告를 먼저 받고 이것을 그후에 처리하자고...

○委員長 金令培 왜 서두르느냐 하면 이번 臨時國會의 會期가 사흘 남았는데 委員會에서는 法案審議를 해서 法司委員會로 넘겨야 됩니다. 法司委員會에서는 그래서 各常委에서 넘어온 法案이 쌓여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合意된 것이니까 빨리 처리를 해서 오늘중으로...

○盧仁煥委員 12時前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順序만 잠깐 바뀌 달라는 애기입니다.

○盧武鉉委員 法案에 관해서 各 委員들의 意見이 각기 다를 수 있고 또 交涉團體의 意思와 다른 意思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本會議은 委員會든 모든 會議에서의 意思의 表現이 항상 交涉團體의 협의에 의해서 일단 이루어지면 그것이 國會에서 그대로 통과되는 慣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交涉團體든지 그 團體를 대표해서 어떤 協의를 했을때 그 협의가 반복된다면 國會가 交涉團體代表間의 小委員會든 또는 幹事會議든 어떤 協의를 한다는 것이 무의미하게 되는데 지금 民正黨幹事에서 말씀하신대로라면 個別的인 意思가 나왔을때 그 결과를 다시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것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다른 委員會와의 관계속에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되어야 할 것을 시간을 늦출만한 하등의 合理的인 이유가 없으면서 왜 交涉團體間에 合意가 된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또 이런 個人의 의사를

타진해야 하는지 알른 남득이 가지를 압니다.

기본적으로 慣行과 信義에 따라서 어떤 會議이 이루어져야지 자꾸 이렇게 本委員으로서는 무엇때문에 그러는지 남득을 할 수 없는 이유로 연기를 하자 이렇게 되어서는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시간을 조금 늦추고 또 한두 委員이 여기에 대해서 交渉團體가 滿意한 것과 다른 내용의 發言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會議을 연기를 해야 한다면 끊임없이 會議은 지연되고 능률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交渉團體가 책임있게 어떤 의사를 표시하고 일단 표시한 의사는 그대로 이 會議에서 관철이 되는 이와같은 慣行을 위해서라도 즉시 처리해 주실 것을 動議합니다.

○李康熙委員 委員長님! 議事進行發言하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예. 李康熙委員 發言하십시오.

○李康熙委員 물론 오늘 우리 常任委員會 本會議가 議事日程대로 진행되는 순서가 여기 흑판에도 나열되어 있고 또 委員長님께서 그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시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다만 어제에도 이 會議終了와 동시에 委員長님께서 오늘 常任委員 10시에 하시는 것으로 어제 말씀이 계신 후에 저희 黨에서 부득이한 사정이지만 아침 9時半부터 中央黨에서 會議가 있으니까 이 會議를 午後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幹事會議를 통해서 절충을 보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委員會事情으로 인해서 10시에 그대로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 小委員會에서 다룬 法案을 물론 시간에 쫓기고 하지만 이것이 歷史에 남는 하나의 法案인데 이 자리에 小委員會에 참석하지 못한 委員들이 그래도 한번쯤은 검토해서 法司委員會에 남긴다거나 本會議에 넘기는 것을 조금 신중을 기하고 또 해당 常任委員會의 全委員들이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會議順序만 바꾸자는 것입니다.

지금 法案處理를 안 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순서만 서로 타협해서 절충을 해서 30분에 올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보다 더 效果的이고 또 소속된 常任委員들의 이해와 또 歷史에 남는 法案處理에 신중을 기할 수 있는 하나의 議事の 진행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특별한 어떤 무리가 없다면 會議順序만 바꾸어서 진행하다가 그 시간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을 해 달라는 의사를 議事進行으로 發言드립니다.

○委員長 金令培 李康熙委員님 發言內容이나 盧仁煥委員님의 發言內容은 동일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盧武鉉委員께서는 그냥 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反對論理를 전개하셨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어서 지금 이 會議가 開議되기 직전에 委員長과 4黨幹事會議를 했읍니다.

그 會議에서 지금 民正黨側에서 말씀하신 黨內 中執委員會가 있으니까 조금 表決處理問題는 늦추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그때 결과적으로 합의되기를 勞動爭議調整法中改正法律案과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 이 두개의 法案은 與野間에 小委員會에서 완전히 합의가 된 것이니까 이것은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勞動部의 報告를 받아가지고 民正黨側 中執委員이 참석을 하실 수 있는 시간여유를 주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合理的인 결과이지 합의된 것을 왜 지연시키자고 하느냐 그 이유는 남득이 안 갑니다. 또 委員長으로서 이것을 서둘러야 될 이유가 이것이 여기에서 議決이 되면 빨리 勞動委員會行政室에서는 서류 준비를 해가지고 法司委員會로 넘겨야 됩니다.

法司委員會에서는 모든 法案이 넘어오는데 순서문제도 있고 그래서 勞動委員會에서 의결된 法案이 法司委員會에서 어김없이 오늘 議決處理가 되도록 이러한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하지 마시고 이것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民正黨側에서 요구하는 그런 순서를 밟는

것이 옳지 않으나 委員長으로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安瓊熙委員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예. 安瓊熙委員 發言하여 주십시오.

○安瓊熙委員 제가 이제 4黨間에 아무 얘기 없이 그저 통과시켰습니다.

그 先例를 남기기 위해서도 中執委가 9時半에 시작해서 11時5分頃에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는 시간이 많이 걸려야 30분밖에 더 걸리겠습니까? 우리 30분동안 기다렸다가 모두가 웃으면서 滿場一致로 決議가 되도록 어제의 先例를 그대로 잇기 위해서도 한 30분동안... 이제 앞으로 15분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15분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委員長 金令培 현재는 滿場一致가 안 됩니까?

○安瓊熙委員 아니 그래도 이왕 나오셔 가지고 승원이 참석하신 가운데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韓光玉委員 委員長님! 議事進行發言하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예. 말씀하세요.

○韓光玉委員 지금 15分 말씀하셨는데 우리 國會가 15分가지고 더 기다려주니 안 기다려주니 이것가지고 더 이상 논란을 할 필요는 없고 15분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서 만약에 15분까지 오시지 않으면 小委員會에서 합의된 대로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만한 議事進行을 위해서 이렇게 動議합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러면 다 異議가 없어요? 15分동안 停會해서 기다려 준다고 하는데 異議가 없습니까?

(異議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15分동안 停會하겠습니다.

(11時23分 會議中止)

(11時59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令培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지금 勞動爭議調整法中改正法律案과 勤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 이 두個 法案을 처리해야 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鄭宗澤委員의 發言申請이 들어와

있습니다. 發言하십시오.

○鄭宗澤委員 民正黨의 鄭宗澤委員입니다.

各黨의 小委員님들이 언젠 밤을 새워가면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또 勤勞者의 權益擁護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특히 勤勞時間을 44時間으로 단축을 시켜주신 데 대해서는 의당 勤勞者의 權益을 위해서 소망스러운 條項입니다만 다만 이 附則 第3項의 勤勞時間에 관한 經過措置에 있어서 適當 勤勞時間을 300人 미만의 事業 또는 事業場등 勞動部長官이 지정하는 業種에 대해서 91年6月30日까지로 돼 있습니다.

물론 大企業에 있어서 90年9月30日까지는 일을 하겠습니까만 어제도 황승민 새로 당선되신 中小企業中央會長이 오셔가지고 현재 여러가지 우리나라의 經濟狀況이 輸出이 부진하고 또 原料切上과 貿易障礙에 따라서 中小企業이 굉장히 타격을 입는 것 같습니다. 특히 社會主義國家인 中國등 여러나라들이 지금 눈을 뜨고 資本主義國家로서의 일부 전향하면서 技術과 資本을 先進國家에서 도입해가지고 우리의 貨金보다 5分の 1내지 10分の 1의 싼 貨金으로 우리를 바짝 뒤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우리는 가장 중요한 福祉가 就業福祉입니다. 1년에 50萬名씩 就業人口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50萬名씩 늘어가는 就業人口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만의 하나 中小企業이 여기저기서 倒産이 됐을 때 많은 數字가 나왔을 때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勤勞者의 權益擁護나 이분들에 대한 處理改善에서 자칫 역행하지 않겠는가 이래서 이 但書規定은 今年度 大企業은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今年度 經濟狀況을 봐가면서 今年 定期國會나 來年度의 國會에서 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미리 91年6月30日까지로 막 못박지 말고 이것을 좀 신축성있게 오늘 정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을 일단 幹事會議를 해서 조정해 주십사 하는 建議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 金令培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조정을 해주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은 없으십니까?

○鄭宗澤委員 條文은 이 法이 따로 정하는

期間까지는 46時間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與小野大에서 野黨이 定期國會나 來年에 正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與大野小라면 어렵겠지만 與小野大에서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제가 律士가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法이 正하는 期間까지라든가 그렇게 調整해 주실 것을 正식으로 要請합니다.

○委員長 金令培 李海瓊委員 發言하세요.

○李海瓊委員 그와 관련해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지금 鄭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두가지 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하나는 이미 與野間에 合意된 사항들 바로 可決 직전에 와서 다시 問題提起하시는 점에 의아스럽게 생각되는 점이고 또 하나는 中小企業이 여러가지 經濟與件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同意합니다. 또 中小事業場의 앞으로 전망에 있어서도 그 점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中小事業場의 經營條件의 惡化가 果연 이 勞動時間으로 因해서 생긴 요인이 큰지 아니면 元貨切上이라든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큰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約100億弗 채 못되는 貿易收支의 黑字 중에서 이른바 몇個의 綜合商社그룹들의 黑字幅은 近180億弗에 가까운 數字입니다.

그리고 中小企業은 지금 現재도 對美輸出에 있어서 赤字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元貨切上으로 因한 압력을 中小企業家하고 中小企業事業場에 있는 勞動者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大企業事業場의 勤勞者들은 現재 賃金構造도 中小企業事業場의 勤勞者들보다 훨씬 좋은 形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나은 조건을 만들어주면서 中小企業保護라는 觀點만을 생각해서 中小企業事業場 勤勞者들에 대해서는 勤勞延長時間을 差等을 둔다는 것은 勞動者 一般으로부터의 대단한 叱咤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合意된 內容은 통과시키고 中小企業事業場을 보호 육성해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資本이라든가 이러한 所管事項이니까 그것은 다른 部

맡이기는 합니다마는 當該 政策室에서 그런 쪽을 政策을 통해서 支援함으로써 中小企業을 보호해야지 現재와 같은 大企業 勤勞者들의 조건은 호전을 시켜주면서 中小企業 勤勞者들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勞動委員會에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合意된 사항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令培 鄭宗澤委員의 發言內容은 어떤 修正案을 내셨다고 하면 修正案內容을 가지고 贊反討論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修正案이 아니라 그러한 취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취지를 幹事會議에서 한번 論議를 해달라고 하는 發言內容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與野가 對立現象에 있다 하더라도 도리상 幹事會議에서 한번 論議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結果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냥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委員長으로서 는 생각합니다.

盧武鉉委員 發言하시지요.

○盧武鉉委員 幹事會議에서 한번 論議하는 것에 關해서 根本적으로 異議있다는 立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基本的으로 修正案을 幹事會議에서 다시한번 論議해 달라고 함에 있어서 그 正當性은 幹事會議라는 벌폐된 장소에서 대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提議를 하심에 있어서 鄭委員께서 當당히 妥當性있는 根據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 委員會에서 幹事會議에서 이 問題를 논의한다 할지라도 反對의 論據도 公開적으로 討論된 상태에서 幹事會議로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때문에 反對의 論據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마디 드리고 싶은 立場입니다.

우선 賃金引上에 關해서 말씀들 하시는데 週48時間의 勞動時間을 週44時間으로 줄일 경우에 結果적으로 4時間에 關해서 時間外 手當을 주게 된다는 結論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勞動時間이 週2時間分에 關해서 의 賃金이 引上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結果的 數値로 따지면 48分의 2가 됩니다. 이것은 約4%를 조금 넘는 정도의 것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당

장 施行된다는 것이 아니고 91年度 7월까지 猶豫期間을 가지고 있습니다. 賃金引上이 原價의 引上要因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점에 관해서 87年 88年에 經濟企劃院에서 發表한 바에 의하면 賃金이 10% 引上되면 約 0.9%의 原價引上要因이 발생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약 4% 정도가 인상되면 효과를 가져올때 原價引上要因은 約 0.36% 정도의 引上要因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날 元貨切上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元貨切上이 年間 10% 내지 10% 안팎의 급격한 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原價引上要因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프론테이지는 그대로 손실을 가져다주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輸出單價의 引上의 要因에 바로 연결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 조금전에 李海瓚委員께서도 적절하게 지적하셨지만 大企業에 있어서의 賃金과 中小企業의 賃金隔差가 이미 벌어져 있는데 中小企業만 또 더 불리한 대우를 받으라고 勞動者에게 말할 合理的인 根據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든간에 60年代중반 經濟開發이 시작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로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땀흘려 일을 해온 勞動者들 그야말로 輸出의 역군이요 産業의 戰士라고 말해 왔던 사람들이 자기의 몫을 충분히 받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해 준 덕분이라는 것은 鄭周永 現代그룹會長도 國會聽聞會에 나와서 밝힌 바까지 있습니다. 이들이 땀만 흘린 것이 아니고 엄청난 높은 產災率에 시달리면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勞動時間에 시달리면서 그동안 20餘年을 國家 經濟發展에 기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다시 돌아켜보면 獨占資本의 集中化現象은 더욱더 加速化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勞動分配率은 70年代에 46%에서 84년에 26%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서 中小企業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中小企業과 勞動者들이 어려운 것은 獨占資本의 市場과 기타 經濟의 집중으로부터 벗어난 것이고 결코 勞動者들의 몫이 커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다. 이 시기에 있어서 韓國의 政治가 해결해내야 될 문제는 勞動者들은 이상 더 귀어싸서 中小企業을 살리려는 政策을 執行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獨占財團에게 편중된 富를 골고루 分配할 수 있는 다른 政策에 의해서 中小企業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道德的인 政治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 있어서도 87年 그리고 88年 勞動者들은 이제는 자기들의 몫에 대해서 자각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요구를 목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國會 勞動常委에서 또는 우리 國會가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뚜렷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이 政治人 당신들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어느날 아침에 설득되어서 그들의 요구를 하루아침에 철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憲法 그리고 勞動關係法에 규정된 자기들의 권리의 行使로서 實力行使를 하고 나오리라는 것은 당연히 예측되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막지 못하면 罷業은 그들의 권리인 이상 罷業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그와 같은 요구의 충돌속에서 政治가 中間調節者로서 合理的인 조절을 하지 못할때 올해 經濟發展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本委員이 보는 입장에서는 勞動者들의 요구는 이상 더 억누를 수 없는 상황에까지 온 것이고 國會에서 어떤 法을 통과시키더라도 그들의 現場에서의 투쟁은 줄기차게 그리고 더욱더 확산되어 갈 것이라는 것이 올해의 展望입니다. 政府도 國會도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아무런 效率的인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왜냐 바로 勞動分配率의 低下와 獨占資本 資本集中 經濟力集中이 바로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는 가장 큰 애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國會를 비롯한 政府 그리고 與黨은 여기에 접근하는 방식을 勞動法에서 불과 48分의 2의 賃金引上效果를 가져오는 그것도 먼 훗날 가져오게 되는 이 法에 대해서 어떤 制動을 거는 것보다는 다른 方法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勞動問題와 韓國經濟問題를 풀어 나가는데 올바른 접근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反對討論 마치겠습니다.

○**鄭宗澤委員**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예. 말씀하시지요.

○**鄭宗澤委員** 두 위원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政府與黨에서는 20年間的 成長政策에서 이제 福祉政策으로 政策을 바꿔나가고 있고 또 저희 政府與黨이 中小企業 構造調整을 통해서 많은 基金을 축적을 해서 中小企業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中小企業이 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또 大企業보다 中小企業의 勤勞條件이나 賃金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은 낮은 데로 흐르듯이 熟練工이 점차 中小企業에서 大企業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雇傭創出이 되고 숙련되면 다시 大企業으로 가고 이렇게 물이 흐르듯 흘러가지 않겠느냐 또 지금 당장 우리는 48時間 40餘年間 해온 勤勞時間이 이 法이 公布된 날로부터 46時間으로 당장 낮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中小企業의 保護的인 측면에서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定期國會에 가서 今年度 景氣展望이 좋고 中小企業이 더 활발히 움직여진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91年6月30日이 아니라 90年9月30日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中小企業을 우리가 보호 육성하고 그것이 바로 勤勞者를 보호 육성한다고 하는 큰 관점에서 이것을 한번 再檢討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韓光玉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지금 鄭委員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다른 同僚委員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法案에 대해서는 지금 與野가 合意를 본 法案입니다. 또한 우리가 中小企業에 대한 여러가지 問題點에 대해서도 이미 충분히 討議가 되어서 與野間에 이러한 法案을 만들어냈는데 다시 이 문제를 常委에서 再論하는 것같은 인상이 들어서 몹시 답답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法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또 民正黨이 中小企業에 대한 여러가지 고려한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잠깐 停會를 해서 이 문제를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委員長 金令培** 지금 韓光玉委員님의 發言

도 계셨고 아까 말씀드렸음니다라는 修正案이 나오지 않은 이상 事案을 놓고 贊反討論을 하는 것은 우습습니다. 다만 幹事會議에서 다시한번 의논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 이니까 그런 정도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韓委員도 그런 發言을 하셨으니까 잠시 停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18分 會議中止)

(12時44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令培** 會議를 繼續開하겠습니다.

방금전에 鄭宗澤委員의 요청에 따라서 委員長과 4黨幹事會議를 했습니다. 그 결과 鄭宗澤委員이 요청한 그 문제가 合意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法案審査小委員會에서 올라온 2個法案을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異議없으시지요?

○**鄭宗澤委員** 그러면 정식으로 修正案을 내겠습니다.

4黨이 小委員會에서 合意한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도 양보를 해서 이 法體系上 300人 미만의 事業場은 91年6月30日로 되어 있고 또 그 이외 事業場은 91年9月30日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함께 體系를 맞추기 위해서 91年9月30日로 修正動議합니다.

○**委員長 金令培** 鄭委員님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附則 3項에 「6月30日까지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9月30日」로 바꾸자는 修正案이죠?

여기에 대해서 再請있습니까?

(「再請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하면 小委員會에서 올라온 原案과 이 修正案에 대해서 討論하실 분 계십니까?

李海瓚委員 말씀하세요.

○**李海瓚委員** 午前에 우리가 이 法案을 가지고 두시간 가까이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를 하고 있는데 民正黨側 여러 위원께서 오늘 民正黨의 中執委가 끝나면 도착을 해서 小委員會에서 합의된 것을 滿場一致로 기분 좋게 通過시키자 이런 提案이 있어가지고 15分間 停會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續開한 이후에 발생한 經緯를 보면 결국은 다른 修正案을 제기하기 위해서 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3個月을 늘려본을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같이 중요한 날 이렇게 會議을 遷延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섭섭합니다. 그리고 이 案을 修正案으로 通過된다 하더라도 中小企業 事業場들의 事業에 큰 도움이 거의 안됩니다. 오히려 中小企業事業體의 지원은 商工이라는가 財務委員會에서 별도의 支援策을 강구해야만이 中小企業이 발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 案에 대해서 幹事會議에 부칠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없고 두案中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별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會議가 遷延되는 것에 대해서는 섭섭하다는 말씀을 안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金令培 李相洙委員 말씀하세요.

○李相洙委員 이 法案을 審議했던 小委員會의 委員長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의 小委員會의 審議過程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野3黨의 改正案이 확정되니까 뒤늦게 民正黨에서 우리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施行時期를 1990年12月末로 保留해 주면 참여하겠다 해서 우리는 가능하면 함께 합의해서 合意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결정된 것을 撤回하고 같이 審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審議를 한 결과 1990年9月30日로 하기로 4黨間에 합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또 갑작스럽게 또다시 합의를 무시하고 다시 中小企業에 한해서는 1991年12月末까지로 延長해주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갖은 힘상과 인내와 타협끝에 中小企業에 관해서는 1991年6月末로 大企業은 1990年9月末로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합의해서 本委員會에 올라 왔습니다. 사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委員님들의 論理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中小企業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사실 原料切上과 관계돼서 輸入에 관계된 中小企業이 어렵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다른 一般的인 中小企業도 정말 倒産 지경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昨年에 中小企業의 一般的인 賃金引上의 목이 한 10%를

넘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아까 盧武鉉委員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시간에 대해서 올라보았자 우리 計算으로 봐서는 約 2%의 賃金引上이 됩니다. 그렇다면 2%가 基本的으로 올라갈 때는 使用者와 勞動者가 賃金引上 타걸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너희들이 法이 通過돼서 2% 올라갔으니까 이번 賃金引上할 때는 그 점을 감안해 가지고 조금만 올라자 이렇게 조절하면 충분히 다른 기능으로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44時間制를 바로 시작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무려 2年3個月後인 91年6월에 가서 시행하자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앞으로 정말 中小企業이 어려워져 가지고 賃金を 단 몇 %로 올릴 수 없는 형편에 놓인다면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이 附則의 시행을 保留하자 이렇게 할 용의도 있습니다. 모든 法律을 제가 보았지만 이렇게 施行期間이 2年3個月로 늘어진 그런 法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法律의 一般的인 형식을 무시하고 까지 2年3個月後로 미룬 것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다시 與黨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대단히 저로서는 불쾌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4黨의 合意精神을 살려서 사실 91年度 6月30日에 시행될 것이라면 91年度 9月30日에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불과 3個月 차이니까 野黨이 양보를 해가지고 與黨의 修正案을 받아들여서 서로간에 웃으면서 이 法을 通過시켜야지 이것이 또 本會議에 올라가서 贊反討論이 되고 하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個月 양보하고 저는 修正案대로 通過하기를 意見開陳합니다.

○盧仁煥委員 아까 會議을 停會를 하자고 提議를 한 사람으로서 제가 停會를 요청했을 때 조금 會議를 연장하자고 했을 때에는 우리黨 委員들이 다른 會議에 참석을 해서 미안하다고 그랬고 또 小委員會에서 4黨이 다 合意했지만은 그래도 本會議에 참석해서 異見을 提示할 수가 있으니 本會議에 우리 委員들이 참석해서 意見提示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랬습니다. 오면은 小委員會에서 合意한 것을 滿場一致로 合意해서 해주겠다 하는 것으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고 두

번째 물론 어제 中小企業中央會長... 전에 부터 쪽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요구가 93年에 시행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來年이나 또 다음해... 今年度에도 모르지요. 中小企業의 經營이 좋아진다면... 물론 2時間 「오버타임」 15% 할 것 같으면 인상요인이 4%라고 하지마는 기타 賞與金이나 전부 다하면 引上要素도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한 計算을 해보아야 될 것이고 우리 中小企業이 물론 大企業과의 연계관계에 있어서 金額을 못받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 모든 요소를 우리가 수정해서 해나가더라도 지금 中小企業의 競爭力이 점점 약해져가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좀더 우리가 시기를 봐서 漸次的으로 해나가자는 정신이니까... 물론 法體系上 하나는 6月30日 하나는 9月30日 이것이 안맞으니까 3個月 연장하는 것이지만 실은 그것이 中小企業에서 요구하는 93년까지 보류해 달라는 요청에는 못 미칩니다.

그러나 數에 밀려가지고 아무리 幹事會議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提案하더라도 안되는 것이니까 그것이라도 法體系를 이용해서 提案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委員長 金令培 南載熙委員 發言하십시오.

○南載熙委員 李相洙委員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결론은 난 것 같은데 다만 記錄上의 문제로 이것이 速記錄에 掲載되고 있는 문제이니까 記錄上의 문제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李海瓚委員님께서 다른 뜻에서 한 것은 아니겠고 그냥 말씀을 하시다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까 鄭宗澤委員이 제기했던 修正案이 무슨 中執委의 결정으로 그런 修正案을 내도록... 꼭 이것이 民正黨 中執委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된 것처럼 아까 中執委를 끌어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中執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다만 鄭宗澤委員이 아까 다 아시다시피 이런 修正案을 제기했던 것이고 지금은 사실상 鄭宗澤委員이 자기 修正案을 철회한

것입니다.

다만 字句上의 문제이고 李相洙委員이 받아들여서 이 문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記錄이라도... 民正黨 中執委에서 할일이 없이 가지고 그런 조그만 일 가지고 中執委에서 얘기해서 시간이 지체돼 있는 것 같은 速記錄上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점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밝혀드립니다.

○委員長 金令培 신속히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鄭宗澤委員께서 修正案을 發議하시고 또 李相洙委員이 贊成發言을 하셨습니다. 사실 小委員會의 「멤버」로서는 小委員會의 案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 상례이고 그렇습니다 마는 어떻게 된 노릇인지 小委員會 委員長이 修正案에 贊成하니 이상합니다.

여하튼 분위기가 이런데 停會해서 協議를 하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잠깐 野黨側 幹事 세분은 이 앞으로 잠깐만 오시지요. 議論 좀 합시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會議가 進行中입니다. 잠담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野黨幹事 세委員하고 委員長이 協議를 했습니다. 그결과 3個月이라고 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이 法案을 與野間에 小委員會에서도 合意가 됐고 또 이 全體會議에서 滿場一致로 통과시키는 것이 모양이 좋게다 이런 취지에서 그 修正案을 받아들이기로 이렇게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묻겠습니다.

鄭宗澤委員의 修正案에 대해서...

○李台燮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그것을 먼저 處理하시는데... 미안합니다마는 勞動爭議調整 法서부터 순서대로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委員長 金令培 그것은 法的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鄭宗澤委員의 修正案에 대해서 異議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修正案이 採擇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議決로 들어가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第2項 第3項의 勞動爭議調  
整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해서 小委員會의 報告  
대로 原案은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代案을 勞動委員會의 案으로 採擇  
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으십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第5項 第6項의 勤  
勞基準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해서 小委員會에서  
報告한 대로 原案은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  
니하고 그 代案을 修正案을 포함해서 勞動  
委員會의 案으로 採擇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현재시간 1時5分입니다. 中食을 하시고 續  
開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시간이 촉박하니까 한시간  
반정도 시간만 갖도록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2時30분에 續開하기로 하고 停會를  
宣布합니다.

(13時5分 會議中止)

(14時55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令培 會議을 續開하겠습니다.

### 7. 勞動部の釜山港運勞動組合運營實態特別調查 結果報告

○委員長 金令培 이제 午後會議에는 이미  
정해진 議事日程에 따르면 議事日程 第7項  
勞動調合法中改正法律案을 처리해야 될 순서  
입니다마는 各黨의 幹事님들과 협의한 결과  
여러가지 사정상 순서를 바꿔서 15項을 7항  
으로 바꿔서 勞動部の釜山港運勞動組合運營實  
態特別調查結果報告를 上程하겠습니다.

그러면 勞動部長官 나오셔서 報告해 주시  
기 바랍니다.

○勞動部次官 李龍俊 勞動部次官입니다.

사정에 의해서 次官이 대신 報告 올리겠  
읍니다.

지난 2月22日 國會 勞動委員會의 決議에  
의해서 釜山港運勞動組合調查決議에 따라 監  
査官을 班長으로 저의 本部 팀 하고 釜山直  
轄市 釜山地方勞動廳 3個機關이 合同으로 89  
年2月24日부터 3月3日까지 實日字는 5日동안

釜山港運勞動組合에 대하여 組合員의 增員과  
加入등의 新規雇傭管理 組合員의 轉配와 懲  
戒등의 人事管理 豫算執行과 組合費徵收등  
勞動組合運營事項 또 84年度 監査指摘事項의  
是正與否 및 기타 情報事項등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하였습니다.

調查結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調  
査責任을 맡았던 班長인 金龍昭監査官으로  
하여금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監査官 金龍昭 報告  
드리겠습니다.

(報告)

調查概要

期 間: 1989.2.24 1989.3.3(實勤務 5日)

編 成: 勞動部(本部)

釜山直轄市(管轄 行政 官廳)

釜山地方勞動廳

※班 長: 勞動部 監査官

理事官 金龍昭

勞動組合 現況

1. 實 態

○名 稱: 釜山港運勞動組合

○所在地: 釜山直轄市 東區 草梁洞 1185

10

○委員長: 吳文煥('87.5 '89.5)

○組合員數: 7,845 \*臨時組合員 約 1,300名

○組 織: 23個連絡所 446個班

○設立日: 1980.11.15

○賃金水準(月平均)

-陸運(426千원)

水産(321千원)

C.Y(482千원)

港灣

·本船(701千원)

·陸上(567千원)

·海上(386千원)

2. 豫 算

(單位: 千원)

科 目	'87	'88	備 考
計	785,474	1,086,705	○辦公費('88)72,000
義務金	68,772	79,680	○特別基金
運營費	443,684	585,128	·獎學金: 1,385百萬元
事業費	270,681	389,892	·共濟會: 446 "
其他	2,337	32,005	·厚生福地: 21 "
			·退職積立: 1,395 "
			·信用基金: 3,413 "

調查結果

重點調查事項

1. 新規 雇傭管理

○組合員 增員

○組合員 加入

2. 人事管理

○組合員 轉配

○組合員 懲戒

○連絡員 任命

3. 勞動組合 運營

○豫算執行

○組合員 徵收

○物品 管理等

4. 情報事項

○辦公費 過多 策定

○水協 忠武洞 委販場 陳情內容

○세망 C.Y不當加入 不條理

5. '84監查指摘事項 是正與否

1. 新規 雇傭管理

○組合員 增員: 妥當함

· 增員 內容

7,364 7,845

· 481名 '87 → '88

· 調查 結果

· 新規 加入者 1,033名中 563名은 組織擴張에 따른 增員임.

· 實際 '88年 新規 加入者는 470名이며, 退職者는 552名으로서 82名 減少

\* '88新規加入者: 1,003名

\* '88組織擴張: 563名

\* '退職者: 552名

○組合員 加入: 一部不當

· 新規 加入 對象

· 臨時 組合員中 加入: 458名

· 組織 擴張 吸收: 563名 1,033名

· 外部人 加入: 12名

\* 外部人 12名 加入不當

新規 加入節次: 妥當함

· 加入節次: 連絡所長 推薦→人事委員會 決議→委員長 發令

· 根據: 規約 第7條 組織要綱 第24條

· 調查結果

加入節次는 瑕疵없으나 人事委員會 審査 疏忽

2. 人事管理

○組合員 轉配: 一部 不當

轉配('88年 468名)

· 同一連絡所內: 347名

· 連絡所間: 121名

轉配方法

· 轉配節次는 組織要綱의 轉配基準에 依하여 轉配시켜야 함.

· 轉配基準: 同一連絡所 및 同一 作業職種 加入後 1年以上 者

· 連絡所長의 轉配要請→人事委員會→委員長 發令

調查結果

· 魚類分野等의 추연학外 41名은 轉配基準에 違背되는데도 勤勞條件이 좋은 第3埠頭等으로 轉配措置

· '89.1.4 1.27影島連絡所 최재홍씨外 18名을 轉配하면서 轉配要請書 事後 補完

○組合員 懲戒

不當懲戒者 內容('87. 現在)

· 不當懲戒者: 144名

· 懲戒 種類: 解任 2名 就業中止 또는 警告 142名

· 調查結果

· 懲戒規程 不當하게 制定

規約上 懲戒는 人事委員會의 決議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도 懲戒規程에 警告 및 就業中止는 委員長 및 連絡所長의 職權으로 懲戒토록 한 것은 規約에 抵觸

· 懲戒節次 不當

規約 第55條 懲戒規程 第5條: 懲戒時에는 疏明의 機會를 반드시 賦與하여야 함

· 連絡員 이수석外 1名: 疏明機會 未賦與(解任)

○連絡員(班長)任命: 一部 不當

規約 任命

· 新規 任命 資格基準

3年以上 經歷者를 任命토록 規定되어 있음(規約 第47條)

· '88新規 任命者: 54名

· 指摘事項

· 經歷 未達者 정봉길外 2名 任命

○動員連絡部 不實運營

連絡所間 閉鎖的 勞務供給으로 活動이 없는데도 機構存置

次長 1名 勤務

○就籍者 申告:一部 不當

申告對象

- 申告畢者:3,200名
- 未申告者:86名

調查結果

- '89.3.2 現在 3埠頭 신규상外 85名 書類具備中の 理由로 申告解怠
- T.O.C制 實施에 따라 荷役協會에 登錄 遲延으로 不利益招來(退職金)

○停年例外 規定:不當

調查結果

- 規約 및 團體協約에 停年 60歲로 되어 있음.
- 任員, 連絡員 例外 認定

指摘事項→例外規定은 衡平原則에 不 合理

·任員에 對하여 規約上 停年除外(1 任期中)

·任員(運營委員) 이한우(28.11.28生)外 5名 停年延長

·組織要綱 第29條에서 連絡員 停年 除外(1年延長)

連絡員 이영순(28.3.15生)外 4名 停 年延長

### 3. 勞動組合 運營

○連絡所 運營規程 未制定

規約上 連絡所 運營規程을 制定토록 되어 있음

規程未制定으로 連絡所長 權限 濫用 憂慮

○委員長 辦公費('88)

·豫算內容:72,000千원

前年對比 260%增加('87 20,998)

調查結果

- '88.5.1 代議員大會에서 豫算確定
- 辦公費 內譯은 機密費(14,400千원) 慶弔費 勤務活動費 組合運營費等 임

·組合員이 約 8,000名에 달하여 慶弔 費 業務活動費等이 많이 所要되고 있고 代議員大會에서 確定된 豫算 이므로 不當性을 指摘할 수 없음

組合費 徵收

徵收內容('88.1.1 '88.10.31)

- 組合員:803,075千원(2%)
- 臨時組合員:41,093千원

指摘事項

·組合員이 아닌 臨時組合員으로부터 組合費를 徵收하는 問題는 強制性 이 있다면 不當하다고 사료됨.

物品管理

指摘事項

- 옷장等 15個('88.4.2 購入 2,630,000 원)를 備品臺帳 등재 漏落
- 市外 電話使用簿 記載不實 및 承 認없이 任意使用
- 工事 契約 條件 違背
- 용당連絡所 대기실 및 厚生食堂 設置公社의 着手金 15,463,000원 事 前 支給 不當

### 4. 情報事項

○辦公費 過多 策定:3項 參照

○水協 忠武洞 委販 陳情

陳情內容

- 作業班 調整
- 잠수기 作業班 조중윤 連絡員 任 命 不當
- 잠수기 作業班 모금 및 使用 不當

○調查結果

- 作業班 調整은 勞組自體 調整
- 連絡員 任命 適正
- 모금액 金額 환불(1,200만원)

○세방C.Y關聯 陳情

陳情內容

세방C.Y 新規 加入者 1인당 240만원 金品授受

調查結果 金品授受 問題는 刑事의 問題로 調査 未 了하며 勤務條件으로 判斷할 때 巨金을 주고 就業을 할만한 職 責이 아니라고 判斷됨

·賃金水準:月 480,000원

·상하차 作業의 重勞動으로 轉配忌 避

### 5. '84監査 指摘事項 是正與否

○新規 雇傭管理 및 人事管理

1) 連絡所 運營規程 未制定

- 2) 組合員 懲戒時 節次缺如(懲戒規程 規約抵觸)
- 3) 人力管理 公營制度
  - '84.7.2 規約改正·人力管理委員會 根據마련
  - '86.5.28 自律性 侵害 毒素 條項으로 規約改正--削除
- 4) 組合員 新規加入 轉配等 原則 設定 關係規程 改正(規約 第7,8,48條 組織要綱 第19,,20條)
- 5) 組合員 循環勤務制
  - 組合員 反撥로 未施行
- 6) 機能別 適正賃金 配分制度
  - 檢討結果 組合員 反撥憂慮 未施行
- 7) 未就業 組合員 放置:是正

- 作業班 不當新設:是正
- 物品 不當管理:3項參照

調查結果 措置方案

1. 調查結果

- 調查結果를 管轄 行政官廳인 釜山直轄市에 移牒
  - 釜山直轄市에서 違法 不當事項에 對하여 是正措置 行政指導

2. 改選方案

- 新規 雇傭管理
  - 增員 抑制:勤勞條件 改選方案 講究 新規加入은
    - 臨時組合員 優先原則(特殊分野 除外)
    - 臨時組合員 漸進的 縮小
  - 臨時組合員은 組合費 徵收는 臨時組合員의 意思에 따라 納付與否 決定

○人事管理

- 轉配
  - 客觀的 基準(循環勤務)을 告示
  - 基準에 依한 公開的 轉配
- 懲戒
  - 規約에 抵觸되는 部分의 懲戒規定 改正
  - 客觀的 基準의 設定

○勞動組合 運營

- 勞動組合 運營의 民主性提高
  - 支配的 運營·組合員 總意에 依한 運營
  - 執行部側과 一部 不滿組合員間의 和合方案 模索

- 組合員 意見 收斂制度 研究導入
- 雇傭管理 人事管理 計劃을 組合員이 納得할 수 있도록 弘報
- 豫算執行等 勞動組合 運營 狀況 公開
- 會計監査 活動 強化
- 代議員大會 報告
- 全 組合員에 公開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이어서 勞動部의 特別調查 結果報告에 대한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統一民主黨所屬 盧武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盧武鉉委員 基本的으로 이번 調查가 國會에서 지난번 政策質疑때 기론되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에 지적되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라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組合員의 任命不當과 轉配에 있어서는 不條理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그 不條理는 金品授受와 관련된 부분이지요. 이번 調查內容에 國會에서 지적되었던 內容에 관해서 바로 지금까지 쪽 報告를 했던 많은 內容중에서 많은 것이 지적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癩疾的으로 잘못 되어 있는 構造的 不正의 派生的 효과에 불과한 것이고 本質的인 것은 바로 여기가 돈생기는 자리다 그렇게 지난번에 지적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組合員의 加入을 둘러싼 金品授受의 非理가 있기 때문에 돈이 생기기 때문에 자리를 무리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파벌싸움도 생기고 그런 것이니까... 그리고 이와같은 여러가지 運營上의 不條理와 亂脈이 발견되기 때문에 枝葉的인 문제말고 本質的인 문제에 관해서 調查를 해야 한다는 것이 調查團을 구성하자는 발의의 근거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調查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報告中에...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그 부분에 대해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釜山에 내려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

다. 그래서 조금 전에 報告 말씀드린 대로 各種 提報를 일으려고 노력도 하고 했읍니다. 實質적으로 저희 調査班이 내려가서 활동하는 기간동안에 본꼐다 하는 사람이나 받았다 하는 사람 아무도 提報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저희 調査班中에서 地域의 情報事項을 입수해서 세방콘테이너야드에 대해서도 情報를 입수해서 調査를 하였읍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저도 담당한 것은 提報者가 無記名으로 提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일일이 搜查權이 없기 때문에 全組合員을 상대로 調査할 수는 없었읍니다.

○盧武鉉委員 지난번에 調査를 하고 있는 중에 調査班中의 한사람이 本委員을 보조하고 있는 秘書를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勞動部監查官 金龍昭 있습니다. 本部의 課長과 擔當 事務官을 제가 보냈읍니다.

○盧武鉉委員 그 당시에 몇가지 調査에 도움이 되는 資料로 준 것 중에서 調査의 方向에 관한 것은 받아가고 具體적으로 告發者로 자기이름을 밝히고 나서겠다는 사람의 名單은 수령을 거절하고 가버린 일이 있지요?

○勞動部監查官 金龍昭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報告 받기로는 陳情內容中에서 記名으로 이름이 적힌 난은 거기에서 종이 가 찢어져 있었읍니다. 그래서 왜 찢어졌나 하니 그것은 事務室에서 찢어서 이것은 記名을 밝힐 수 없다 해서...

○盧武鉉委員 記名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의 名單을 제가 넘겨주겠다고 제의를 했읍니다. 지금이라도 넘겨드리면 調査하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욕심각심 本委員의 秘書官하고 그 당시에 왔던 勞動部職員하고를 대질시키고 이런 것은 지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이 문제를 시작해 놓고 本委員이 資料를 안넘겨 주겠습니까!

참고삼아 한가지만 내놓아 볼까요. 本委員이 가지고 있는 이름을 밝힌 사람들의 數字도 많이 확보되어 있거니와 가지고 있는 資料中에 이름을 숨긴 부분은 設問紙를 보내면서 당분간 어떤 본인들이 이름을 밝히겠다고 확실하게 새로운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는 이름을 비밀로 해 주겠다는 약속때

문에 그 이름을 다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요. 記名으로 받은 것만해도 지금 23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직접 나서서 陳述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作業을 해 놓고 왜 本委員이 그것을 안넘겨 주니까? 常識적으로 문제는 처리되어야 될 것인데 거기에서 情報蒐集 뭐하러 합니까? 情報蒐集 해 가지고 드리는 것도 안받으면서...

그 擔當 公務員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勞動部監查官 金龍昭 擔當課長 姜다운 課長이 여기 와 있습니다.

○勞動部雇傭管理課長 宋孟鎬 제가 다녀왔읍니다.

○盧武鉉委員 그런데 名單을 지금 받을 수 있다 없다 職業安定法 소정의 調査上 소위 勤勞基準法 第103條에서 勤勞監督官의 職務中에 勞動關係法에는 職業安定法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職業安定法 소정의 調査는 우리가 할 수 없다 權限도 없다 이렇게 말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勞動部雇傭管理課長 宋孟鎬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名單이 있는 것은 저도 확인을 했읍니다. 그런데 補佐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본인들이 名單을 제시하면은 본인들한테 恠가 있을 것이 우려되니까 당분간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말이 있었다고 저한테 얘기했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名單은 제가 가져가지 않겠읍니다. 나머지 資料만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가지고 왔읍니다.

○盧武鉉委員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地方廳에 가서도 法律解釋을 놓고 다투고 그래서 法律解釋에 관해서 수차 문의가 오고 이런 마당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이름을 감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이름을 내놓고 陳述을 하겠다는 사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調査를 요청해 놓고 그 資料를 안넘겨줄만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 문제에 관한 紛爭은 그만 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그 문제에 관해서 資料를 넘겨드리면 調査하시겠습니까?

○勞動部監查官 金龍昭 예. 별도로 調査를 하겠읍니다.

○盧武鉉委員 調査할 수 있는 權限은 있습니까?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그것은 資料提出에 의해서이고 이번 調査는 國會議決에 의해서이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資料提出에 의해서 管轄機關에 刑事告發등 措置를 취하겠습니다. 직접 調査가 不可能 할시에는...

○盧武鉉委員 不可能한가 안한가가 지금까지 檢討가 안되어 있습니까?

아까 情報事項 調査했다고 했지요? 어떤 根據法에 의해서 情報事項 調査했습니까?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그것은 다만 저희들의 調査事項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제가 班長의 職權으로써 擔當課長과 事務官을 各種 情報를 입수할 수 있는 데도 現地出張을 보내서 입수토록 措置를 했습니다.

○盧武鉉委員 아무리 國會的 요청이라 하더라도 公務員의 權限이 없는 일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情報事項에 관한 調査部分은 權限이 있기 때문에 하신 것 아닙니까?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情報事項을 입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은 搜查機關에 告發措置를 취하고...

○盧武鉉委員 告發할 수 있는 資料調査까지도 權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職業安定法上 調査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業務監査에 金品授受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調査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勞動部 公務員이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職業安定法 違反事項에 대해서는 調査할 수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잊지요. 바로 職業安定法의 許可權者로서 一般的 監査權에 대해서도 할 수 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勤勞監督官의 權限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情報事項을 가지고 調査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國會議員이 주는 情報事項은 情報事項이 아니고 뭐 안받았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합시다 다시 드릴게요.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資料를 주시면 그것은 檢討해서 별도로 調査토록 하겠습니다.

○盧武鉉委員 本委員이 勞動部本部의 特別調

査・정도라도 필요하다고 처음에 質疑했던 것은 地方官署에서 調査하기가 적당치 않다는 諸般理由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調査班에서 調査를 해 주셔야 합니다. 調査를 하시더라도 조금전에 地方官署에다가 맡기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점 때문에 國會에서 거론한 것 아닙니까? 地方官署에서 이미 이 부분을 調査 다 했으면 왜 國會에서 거론되고 勞動部에서 調査班이 왜 만들어 집니까? 특별히 調査班을 만들 필요 없이 地方官署에서 이미 이와같은 諸般問題가 調査되어 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見解를 밝혀 주십시오.

特別調査班에서 調査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地方官署에다 넘기겠습니까?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報告드리겠습니다.

職業安定法 違反이라는 것은 職業紹介로 인한 부당한 事項에 대해서 합시다마는 勞動組合에 있어서 新規加入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과연 職業安定法에 그 金品授受가 저촉되었는가 안되었는가는 좀 더 檢討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一般職業紹介行爲 하고는 좀 별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勞動組合이 組合員으로 加入시킨다는 것은 이미 就業權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勞務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勞務供給을 스스로 하지 않습니까 組合이 그렇죠?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그렇습니다.

(金令培委員長, 韓光玉幹事와 司會交代)

○盧武鉉委員 加入된 組合員을 필요에 따라서 勞務供給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職業安定法上에 勞務供給業務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허가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돈 받은 것이 職業安定法에 저촉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組合員 加入行爲이기 때문에 職業安定法과 관계가 없다면 허가는 왜 나갑니까? 이런 法解釋을 가지고 勞動部가 일하고 있습니까?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그것은 職業安定法에



위반된 것은 서회들이 취급하겠습니다.

○盧武鉉委員 組合員에 加入된다는 것은 바로 就業의 기회를 보장 받는다는 것이고 그로부터 就業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돈이 오고 간다면 就業安定法에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 위반된 것 아닙니까? 勞動組合이 하면 괜찮습니까?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그것은 職業安定法 위반입니다.

○盧武鉉委員 그러면 무슨 다른 견해가 있습니까?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그것에 대해서는 職業安定法上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盧武鉉委員 지금 國會議員들이 여러분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바로 금방 이말했다가 저말했다가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組合이 組合員의 加入과 關係해서 金品을 授受한 것은 職業安定法에 저촉되는지의 與否에 關係해서 새로이 再考해 봐야 된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組合員 加入에 대해서는 職業安定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금 盧委員께서 말씀하신 어떤 勤勞者 供給事業 내지 就業斡旋으로 인해서 했을 때는...

○盧武鉉委員 하나 물어봅시다.

이 경우에 職業斡旋과 組合員 加入이 뭐가 다른니까? 國會議員 자꾸 놀리는 것입니까?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그것은 職業安定法에 違反措置를 하겠습니다.

○李仁濟委員 職業安定法 違反事件을 勞動部 勤勞監督官이 搜查權을 가지고 있습니까?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만큼 有權解釋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죄송합니다. 監査官으로서 職業安定法 關係는 專門家가 아니기 때문에... 職業安定法은 勞動關係法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勞動部에서도 왔다갔다 하는데 勞動部에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지금까지 내놓고 있기 때문에 本委員하고 다투는데 그래서 本委員이 묻는 것은 勤勞監督

官이 搜查를 하지 않더라도 許可權者로서 一般的 監督權에 의해서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가는 것입니다. 許可官廳으로서 소위 허가를 계속 줄 것이냐 안줄 것이냐 그리고 許可權者로서 계속적인 一般的 行政監督을 해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勤勞監督官의 搜查權限에 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一般的 監督權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묻는 이유가 서기에 있는 것입니다.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一般的 許可權者로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있지요? 그래서 그 調查結果가 밝혀지면 權限있는 搜查機關에 告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釜山港運勞組를 職業安定法上 紹介業體로 허가를 해주었어요?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勤勞者 供給事業體로서 허가나갔습니다.

職業安定法 17條에 의해서 國內勤勞者 供給事業은 勞動組合에 한해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래서 이 문제를 조사해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許可權者로서 勞務供給許可를 받은 事業者가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 거기에 적절한 行政措置가 필요하다 할 수 있는 권한이 勞動部에 주어져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關係해서 분명하게 지난번에 이 委員會에서 本委員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勞動部에서 이번에 조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87年11월에 勞動法이 바뀐 이후 소위 特別監督이 불가능하고 特別調查만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職業安定法에 의한 조사입니다. 그런데 職業安定法에 의한 문제의 발생이나 그 職業安定法에 의한 措置事項에 關係해서 아무런 對策도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어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關係해서 어떤 對策을... 지금은 조사한 監督官이 答辯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長官이나 또는 그 上位者가 책임져야 되는데 우선 勞動部의 監督官에게 물어봅시다.

勞動部內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職業安定法... 기본적으로 금품수수 사실이 발견 안 되어있으니까 뭐 문제 삼을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몇가지 지엽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시정하도록 조치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정도라면 시정하도록 조치해도 별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事業者가 1981年度에 10日 이상의 금품수수로 확정판결까지 받고 있고 88年12月27日에 다시 같은 유형의 금품수수로 해서 기소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료를 주면 지금 조사를 또 하겠다고 하는데 했다는 것은 바로 그점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職業安定法 所定の 허가를 계속 주어놓고 이와같은 不正과 非理를 계속 저질러도 괜찮으냐? 따라서 그 監督權에 근거해서 主된 조치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권한을 활용해서 勞動部에서 적절하게 지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도하도록 그다음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핵심적인 부분을 하나도 조사 안 하고 뭐 합니까? 勞動部에서 어떤 對策을 세우기로 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이 報告書에 나와있는 약간의 非理를 가지고 그 결과조치를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아직도 논의를 안 했습니까? 일단 報告하고 사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까?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監査班長으로서 갔다 온 의견을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職業安定法上에 지금 현재 勤勞者供給事業은 勞動組合에 한해서 國內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職業安定法上의 勤勞者供給事業과 勞動組合法上의 勤勞組合 실질적으로 勞動組合 아닌 사람에게 대해서 國內勤勞者供給事業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勞動組合法 第3條 但書 5號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을 지금까지 非理라든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改善方案을 제가 갔다온 班長으로서 提示한 것입니다.

○**盧武鉉委員** 맞습니다. 本委員으로서도 유일한 勞動組合이고 勞動組合 이외에는 供給許

可를 할 수 없고 심사 할 수 있다 할지라도 釜山港灣勞動者 萬餘名의 밥줄이 달려 있는데 許可를 취소할 수야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얘기고 다 아닙니다.

다만 따라서 이와같은 不正과 非條理를 拔本塞源하면서 勞動組合에 계속 勞務供給權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對策이 뭐가 나와 있느냐 하는 얘지요?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거기에 대한 對策이 조사결과 조치방안에 대해서 제가 건의사항을 올렸습니다.

○**盧武鉉委員**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런것들이 나와야지요! 法律上 취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監督權을 발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다 빼버리고 이에 무슨 조사가 됩니까?

그 문제는 넘어가고 다음 質問하지요.

이번 조사과정에서 84年 조사에 참여해서 84年 당시의 不正과 非理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참여한 일이 있습니까?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없습니다.

○**盧武鉉委員** 勞動部에서 혹시 그렇게 人力을 뺄 수 없었던가요? 84年의 是正措置라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是正計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참여하고 立案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단 한사람이라도 들어가서 이 조사활동을 지휘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조사를 했던 사람으로부터 상세한 指針이라도 받은 바 있습니까?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그때 調查班 調查報告書를 직접 검토하고 현지에서도 일일이 대조를 했습니다.

○**盧武鉉委員** 그 다음에 釜山直轄市에서 84年5月9日에 勞動組合에 내려 보낸 是正措置에 관한 一書類들 그것은 입수해가지고 함께 이번 조사에 고려했습니까?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그것은 입수를 못했습니다.

○**盧武鉉委員** 이미 勞動部에서 84年監査結果報告書에 釜山市에서 해야 될 業務事項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같은 文書가 당연히 예측되고 있는데... 알지요?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그것을 勞動部에서 지적한 事項을 가져갔기 때문에...

○**盧武鉉委員** 釜山市에서 細部措置를 해야

할 事項이 위임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釜山市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관해서 착안할만 하지 않습니까?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그것은 釜山市가 勞動部에서 지시내려간 것을 그대로 勞動組合에 지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勞動部에서 자시한 事項만 가지고 했습니다.

○**盧武鉉委員** 勞動部에서 만든 報告書보다는 釜山市에서 내리온 是正措置는 매우 구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規約 몇條 몇條를 개정할 것이며 무슨 規定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하는 따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몇 년동안 이것 없이 監査를 했다는 것은 나침반없이 항해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釜山市에서 두사람을 인원동원을 받아서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당시의 내용을 잘 아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盧武鉉委員** 구체적인 내용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때 있었던 書類... 무엇이 是正指示되었는가를 모르고 조사했다는 말씀이지요?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아닙니다. 本部에서 한 것은 가지고 가서 일일이 대조했습니다.

(**韓光玉幹事, 金令培委員長과 司會交代**)

○**盧武鉉委員** 本부의 것 말고 釜山市에서 뭐라고 지시했는지는 적어도 書類를 보고 참고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盧武鉉委員** 좋습니다. 報告書 5페이지 봅시다. 組織擴張 563名이 순수하게 확대된 조직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미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흡수한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예,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어디어디인지 자세한 내용을 주십시오. 報告書만 주실 것이 아니라 調査結果를 담은 一件書類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자료가 있는 것은 다 드리겠습니다.

○**盧武鉉委員**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한 調査過程 全般에 관한 일관된 자료를 내주실 수 있지요?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예.

○**盧武鉉委員** 563名이 부당하게 인원을 늘린 것이 아니고 事業場을 확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증가된 것이고 따라서 既存組合員에 대해서 아무런 經濟的不利益을 입힌 바 없다 이것이 요체 아닙니까?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예,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런 자료를 조사하면서 가지고 계시겠지요? 말하자면 이 報告書를 만들기 위한 基本調査資料에는 그것이 나와 있지요?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예.

○**盧武鉉委員** 모든 자료를 다 주시기로 하고요. 88年 退職者 552名을 充員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充員은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作業을 위해서 人力이 필요하면 해야 하는 것이고 이렇듯 全體中에서 組合員들의 經濟的 收入을 저하시키거나 종래의 地位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없다는 얘기죠?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그렇습니다.

○**盧武鉉委員** 그 다음 기타 人事管理에서 몇 가지 지적되었는데 이와같은 것들이 발생한 이유는 뭐니까?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그것을 제가 간단히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80年度 國保委때 港運하고 運輸하고 합치고 거기에서부터 組織紛糾가 있어가지고 84年3월에 당시 金東俊씨와 吳文煥씨가 같이 拘束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組織紛糾로 해서 84年3월에 勞動部에서 監査가 나간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87年5月 定期代議員大會에서 吳文煥씨가 委員長으로 被選이 되었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런 것 말고 이 報告書가 상당히 概括的으로 되어 있듯이 그 원인이 業務의 미숙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構造的인 문제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組織紛糾와 運營의 미숙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이번 調査結果로서는 84年度 報告書에 지적되었던 事項에 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그 부분

은 消滅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그렇지는 않습니다.

○**盧武鉉委員** 좀 具體的으로 물어 봅시다.

84年度에 지적되었던 問題點中에서 1番 勞務供給權 行使에 따른 不條理 組合員 新規加入時 多額의 金品授受가 慣例化되어 있고 TOC制度 施行에 따른 大幅成員이 豫想된에도 83年4月 이후 新規加入을 시켰고 新規加入은 事實上 就業中에 있는 臨時組合員을 優先하여야 하나 아직도 臨時組合員이 多數存在하고 있는 反面 外部人이 加入한 事例가 있고 增員에 따른 賃金所得이 減少돼서 組合員의 不滿을 招來했고 그 다음 作業種類別로 賃金隔差가 커서 轉配가 利權化되어 있다.

그리고 連絡員과 連絡所長 補職에 따른 不條理素地가 있다 이렇게 5番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解消되었고 어느 부분은 지금까지 있고 그 당시에 是正措置가 어느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되었다 거기에 대한 對策은 어떠하고... 이렇게 나와야 合理的인 報告書아닙니까? 이 報告書가 거기에 대한 解答을 해주고 있습니까?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84年度 指摘事項에 대한 是正與否에 대해서 報告書에 나와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問題點의 存在與否도 같이 얘기를 해 주셔야죠.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問題點의 存在與否에 대해서는 組合員 新規加入 등에 있어서 기준이 잘못 설정되어서 그 잘못 설정된 事例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84年度 業務監査報告書에 의하면 釜山港運勞組에 構造的인 不條理가 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어떤 면에서 構造的인 不條理로 말씀하십니까?

○**盧武鉉委員** 多額의 金品授受가 慣例化되어 있다. 말하자면 問題點 1番부터 5番까지 보면 여기에는 一回의인 偶發的인 金品授受行爲나 事故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뿌리 깊은 不正과 非理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아닙니까?

監査官의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84年 報告書에도 多額의 金品授受가 慣例化되어 있다 하는 것은 構造的으로 보고 있습니다.

○**盧武鉉委員**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이와 같은 적어도 構造的 不條理는 다 解消되었답니까?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다 해소됐다고 제가 5日 동안에 완전히 파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습니다마는 1984年度 그 당시 狀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狀況으로 볼 때 5日間 파악한 바에 의하면 물론 刑事的 事件이기 때문에 金品收賄關係에 있어서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人事關係 新規採用이라든지 轉配關係는 그 基準을 설정해서 기준에 따라서 하려고 노력하고 한 많이 개선된 점은 발견을 했습니다.

○**盧武鉉委員** 많이 개선됐는가 한번 봅시다.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그래서 數值的으로 저희들이 轉配에 있어서 기준에 미달된 數字라든가 그것을 다 파악을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轉配라든지 新規加入시키는 노력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盧武鉉委員** 지금 다른 議案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묻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本委員으로서의 다음 臨時國會 때나 다음 常委가 열릴 때 다시 質問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參考삼아 한가지 자료를 드리지요.

本委員이 1989年2月17日 總2,770通의 設問紙를 발송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304枚가 접수됐는데 이것 나중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1項은 所屬과 이름인데 안밖한 사람이 많지만 2項에서는 人事權이 組合幹部에게 있기 때문에 人事不條理가 심하다는 사람들이 231名으로 79%를 차지하고 있고요. “費下가 현재 作業班에 就業하게 된 경우”는 아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현재의 作業班에 就業했다는 사람이 151名으로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收入이 나은 곳으로 가려고 하면 現實的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하는 데에 대해서는 자기 경험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식을 말합니다.

“아는 사람이나 組合幹部에게 현금을 주고 부타해야 된다”가 249名으로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就業이나 좀더 나은 곳으로 轉配時 하기 위해 아는 사람이나 組合幹部에게 현금을 주는 사실이 있다면…”이었다면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가” 紹介해 준 사람과 組合幹部가 나누어 가진다 라는 答辯을 262名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까지도 5項이고 6項이 직접 돈을 준 사람을 쓰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의 명단을 本委員이 갖고 있는 것만 約 23名이 됩니다.

그리고 남이 돈주고 就業하는 것을 아는 사람을 얘기하라고 하니가 33名까지 나와 있습니다. 직접 돈을 준 사람이라고 한 사람은 本人이 이름을 밝히고 하는 것입니다.

기타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했더니 여러가지 97%가 金品授受 人事 부조리등 不正剔抉을 요구하는 것이 97名씩이나 되고 그 이외에 여러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辦公費를 公開하고 그것을 糾明해야 된다. 물론 여기에 答辯하는 사람인 調査對象이 우편이기 때문에 反對派들이 조종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할말은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本委員은 이 設問紙에 자기 이름을 밝히는 부분만 숨기고 과연 이것이 作爲的으로 조작됐는가 조작되지 않았는가를 볼 수 있을 만한 心證이 갈만한 原本을 勞動部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명단을 밝힐 사람은 밝혀서 드릴 것이고 匿名으로 하는 사람은 匿名을 요구한 대로 하고 드릴 것입니다. 만일에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려면 글씨를 가지고 앞으로 調査를 해서 보복해 올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勞動部에서 資料를 아껴주시고 그밖에 남의 일 아는 사람들까지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국 이름을 몇 몇하게 밝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더 調査되어야 되고 아직까지 匿名으로 하려고 한 사람은 좀더 本委員이 만나서 설득을 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남의 일을 내가 잘 안다는 사람들은 역시 쉽사리 調査對象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本委員의 意見으로서는 일개 國會議員이

이런 식의 設問調査를 하는 것 보다는 勞動部에서 확고한 決意를 가지고 調査를 해야 勞動者들에게 申告를 받는다면 좀 자유롭게 申告를 받는다면 좀 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班長 引率下에 班員들 몇사람 와 가지고 주었느냐 안주었느냐 보는 앞에섬 안주었다...

심지어 이 設問紙에 하고 싶은 말을 쓰라고 했더니 盧委員 事務室에 우리가 그날 따지러 갔는데 사실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幹部들이 가자고 하는대로 할 수 없이 따라갔을 뿐이다. 참! 미안하다 라는 편지까지 왔습니다. 물론 그 것도 조작됐다고 말하면 단안은 못합니다만 그 原本을 보시면 오랜 職務경험속에서 어떤 心證을 가지리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勞動部에서 本委員이 이와 같은 방대한... 지금 設問紙는 따로 갖고 있는대요. 여러가지 資料들을 이렇게 일개 國會議員이 모아 갖고 있는데 勞動部에서 調査結果 아무것도 없다는 結論이 나와 버리니까 참 실망할 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起訴까지 되어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措置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具體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12 페이지! 84年 是正方案 13 페이지부터 보면 최선을 다하겠다.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하는 一般的인 그러한 얘기와 아주 유사한 것입니다.

民主化를 하겠다 民主化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具體的으로 어떤 점이 毒素條項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民主化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地方自治制를 하겠다 地方自治制를 실시한다면 團體의 長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이렇게 具體的인 것이 나와야 民主化에 대한 것이지 앞으로 民主化 하겠다 앞으로 公正化 하겠다 한번 읽어볼까요?

勤勞條件改善方案講究 轉配에 관해서는 客觀的 기준을 告示하기로 하고 客觀的 기준이 어떻게 해야 客觀的 기준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기준에 의한 公開的 轉配 무슨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公開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公開라는 것은 新聞에

써붙이는 것이 公開입니까? 벽보에 써붙이는 것이 公開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기준이나 1年間の 人事事項을 전부 勤勞者들에게 일일이 배포하는 것이 公開냐 아니면 組員이 자유로이 와서 原本書類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公開냐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直選에 의한 代表監査機構를 만드든가 무슨 具體案이 나와야지... 懲戒에 관해서도 客觀的 기준의 설정 勞動組合의 運營에 관해서 民主性提高 總意에 의한 運營 어떻게 하면 總意가 되는 것입니까? 代議員 뽑아가지고 하는 것이 總意에 의한 運營 아닙니까?

代議員은 組員의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이고 그 代議員의 決議에 의해서 모든 幹部가 선임되고 計劃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總意입니까 總意입니까? 보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總意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 내놓고 國會에 대한 報告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특별한 관심사로서 調査한 結果가 어떻습니까?

和合方案摸索 어찌하면 和合 됩니까?

組員意見收斂制度研究導入 이미 84년에 釜山市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더 보충하고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고치고 시행해 보니까 잘못된 것은 이리이러하기 때문에 실정에 안맞다. 調査하러 갔으면 組合反對派도 만나보아야지요. 내가 反對派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本委員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명색이 國會議員이 組合內部的 組織紛糾에 휩쓸릴 것 같습니까?

勞動部가 만들어 놓은 書類를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調査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本常委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調査하면서 한쪽만만 줄줄 듣고 와 갖고... 研究導入한다 언제까지 어떤 制度를 어떻게 研究해서 導入합니까?

또 한번 읽어 볼까요?

雇傭管理 人事管理計劃을 組員이 납득할 수 있도록 弘報하고...

무엇이 납득할 수 있는 方案이냐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報告받으려고 이런 따위라면 國家機關 아니라도 좋습니다.

일개 個人이 가 가지고 調査하는 것이 낫지요 세 質疑는 여기에서 마칠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일을 많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質問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金令培委員長, 韓光玉幹事와 司會交代)

○李海瓊委員 지금 盧武鉉委員께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는 國會에서 調査班을 편성하고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勞動部에서 직접 調査해서 報告를 받고 미흡하면 國會調査班을 만들자고 지난번에 同意가 됐었는데 저는 釜山港運勞動組員을 지난번에 한번밖에 만난 적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면 調査報告書를 보고서 이런 것이 是正됐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될텐데 이것을 보니까 盧委員이 아까 여러가지를 말씀 하셨지만 무엇이 문제고 어떤 방향으로 是正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것을 보고서 알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은 港灣勞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저도 전에 監査를 하면서 港灣勞組問題를 다루어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렇지만 勞動部에서 이렇게 무성의한 調査를 하게 되면 세월만 가는 것입니다.

그때 國會調査班에서 빨리 가서 調査를 했으면 훨씬 더 문제가 신속하게 처리가 됐을텐데 문제를 더 어렵게 勞動部가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누구와 어떻게 접촉해가지고 世邦같은 것도 이런 사실이 없고 또 巨金을 주고 취업할 만한 職責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 根據라는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꾸 싫은 소리 하기가 싫어서 웬만하면 얘기를 안하려고 그랬는데 이 調査報告書를 보면 면접자가 누구인지 또 누구와 만났는지...

이런 報告書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런 式으로 하실 것입니까?

勞動部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存在價值가 없습니다.

뒤에 있는 調査結果方案을 보면 孔子말씀입니다. 本委員도 10분이면 이런 報告書 씁니다.

代議員數가 몇 명인데 總意를 모으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명이상이 확보되어야 되겠고 어떤 규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代議員의 總意가 民主的으로 수립되겠다 이런 式으로 해야지...

勞動部가 그런 式으로 계속 業務를 보신다면 좋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한가지 긴급한 문제가 있는데 現代重工業이 지금 농성하고 있는 勤勞者들을 강제로 해산하기 위해서 市警兵力이 投入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勤勞者들이 신나를 뿌린 상태인지 뿌리기 직전인지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가지고 분신할 상황인 모양이고 本社에서 救社隊들이 각목을 들고 그 현장에 나와 있는 모양인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勞動部가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勞動部次官 李龍俊 제가 아침부터 여기에 나와가지고 報告를 듣지 못했습니다.

○李海瓚委員 그래서 鍾路警察署에 선화를 걸어보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언제쯤 해산할 예정이냐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勞動部에서 빨리 그 현장에 사람이 나가든가 파악해가지고 불상사가 안생기도록 措置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韓光玉 勞動部側에서는 李委員이 指摘한 대로 現代重工業의 勞使紛糾現場에 빨리 가 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萬全을 期해 주시길 바랍니다.

○勞動部次官 李龍俊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韓光玉 다음은 金炳龍委員 質疑해 주시길 바랍니다.

○金炳龍委員 釜山港灣勞組事件이 제일 처음 國會에 제기된 것은 盧武鉉委員이 幹事會議에 제기를 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서 일단은 行政府에 이 조사를 위임해서 철저한 조사를 함과 동시에 常任委員會에 報告해서 委員들이 남득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調査를 확실하게 해 달라고 勞動部長官에게 일단은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報告를 했는데 盧武鉉委員도 이와같은 調査라고 하던은 믿을 수 없다. 또 李海瓚委員도 같은 말씀을 지금 했습니다.

(韓光玉幹事, 盧仁煥幹事와 司會交代)

서는 좀 더 이 문제를 勞動組合的인 측면에서 볼 때에 하나의 自律的인 團體로서의 政府로부터 어떠한 간섭 또는 調査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자체에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지 이 문제는 그 組合 自體에서의 不正등 이런 문제로 해서 이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政府次元에서 調査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처해서 調査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調査를 갔다 온 결과를 보니까 제가 봐도 남득이 안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調査結果報告를 보면 指示 指導 이런 式으로 報告書가 작성이 됐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國會가 조사를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닙니다. 그 결과가 확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調査班長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좀 묻겠습니다.

우선 當勞動組合의 規約 또는 諸般規定이 있을 것입니다. 그 규정이 무엇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當勞動組合의 모든 規約 또는 雇傭에 대한 규정 또는 사람을 채용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人事管理規定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監査官 報告드리겠습니다.

金炳龍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내용에 대해서 첫째 規約과 각종 人事 加入 轉補 懲戒 그런 것을 重點的으로 규정을 檢討를 했습니다. 단 여러가지 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金炳龍委員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어요.

그리고 職業安定法 勞動組合法 勤勞基準法 이와 같은 法令에 의해서 위배된 사실 이러한 것들을 발견을 어떤 條項에서 어떤 문제는 勤勞基準法 어떠한 문제는 勞動組合法에 저촉이 되었다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배된 사항이 무엇무엇이 있었다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勞動組合法 16條에 의해 가지고 法令에 위배된 규약이 있는지 그것을 檢討를 하고 그 다음에 21條에 의해서 總會 決議 또는 勞動組合의 처분이 규약 또는 法令에 위배된 사항이 있는지 또한 더불어서 職業安定法上의 勤勞者供給事業에 있어서 위배된 사항이 있는지 다만 부당한 事例는 발견이 되었습니까라는 명백하게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懲戒規定이 勞動組合의 規約上에 위배된 것을 발견을 했습니까?

○**金炳龍委員** 그리고 職業安定法에 대해서 위배된 사항은 발견된 것이 없습니까?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지금 현재 그것이 盧武鉉委員님께서도 말씀하시는 金品授受關係는 다만 心證의으로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라는 저희들이 증거는 잡지 못했습니다.

○**金炳龍委員** 金品授受問題는 職業安定法보다는 一般刑事法에 속하는 문제고 詐欺에 속하는 문제가 때문에 職業安定法에 우선하는 이런 위배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달라고 行政府에 부탁을 했는데 가장 핵심되는 문제가 여기서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調査結果가 어딘가 미지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일단 資料를 주어가지고 무엇무엇을 이렇게 위반한 행위가 있었고 金品授受 사실이 있고 또 누가 이런 정보를 제공했다 하려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러한 문제를 하나라도 발견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려면 그러한 사람은 처벌을 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문제를 그러한 수준에서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行政府에 조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사항은 전부 빠지고 전부 적당히 그냥 조사를 해서 적당히 넘어가는 이런 報告인데 그러면 勞動組合法 規約上에 위배된 사항이 있었고 또 諸般規定이 예를 들면 懲戒規定이라든지 또는 雇傭

規定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그 규정을 거기 가서 다 보았습니까?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懲戒規定이 규약에 위배되는 사항을 발견을 해서 저희들이 지적한 것이 報告書에 나와 있습니다.

○**金炳龍委員** 그래서 이와같이 法令上에 잘못된 이런 위배된 사항은 즉시 확실하게 가려가지고 어리이리한 것은 法에 어떻게 위반되었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또 刑事上의 문제는 刑事上의 문제기 때문에 告發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調査班長으로서 철저히 그것을 한계를 구별해줘야지 적당히 지도나 하고 弘報나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行政指導를 하겠다 이것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라는 우선 諸般規定에 위배된 사항 各種法令에 위배된 사항 또는 지금까지 被害者로부터의 정보를 입수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조사를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누가 누구라는 것을 대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사를 하면은 이와 같은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와 같은 金品授受의 이러한 違法된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처벌하도록 勞動部로서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앞으로 다시 한번 그런 방향으로의 조사를 해서 철저히 違法된 사항은 司直當局에 告發을 하고 또 諸般規定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칙한 책임추궁을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政府에서 조치를 하겠다라는 확인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勞動部次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勞動部次官 李龍俊** 알겠습니다.

그렇게 막중하게 책임을 주신데 비해서 저희 勞動部로서는 하느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는 극히 제한된 시간에 委員님들이 보시기에 충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盧武鉉委員께서 資料를 제공하신다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 말씀을 참고로 해서 이 문제가 원만히 그리고 아



주 냉정한 판단에 의해서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盧仁煥 더 質疑하실 委員 없으시지요?

○李海瓚委員 다른 문제에 관해서 勞動部에 몇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 會期가 내일 모레까지고 常任委는 오늘 밖에 예정이 안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産災患者補償金問題가지고 拘束된 勤勞監督官이 있었지요? 그것에 관해서도 이번 會期까지 결과를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준비되어 있습니까?

○勞動部次官 李龍俊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당자는 罷免措置시키고 直上級者는 下位轉補시키고 그 다음에 또 次上級者까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양해하신다면 監査官으로 하여금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海瓚委員 그 다음에 大邱에 지난번 기숙사에 女子勤勞者들 출입을 금지시켜 놓은 職場 대아동상 그것도 精密監督을 해서 會期內에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두가지를 같이 資料로 되어 있는 것은 없었습니까 11頭로 말씀해 주십시오.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監査官 報告드리겠습니다.

事後處理 措置內容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月21日字로 서울 東部支廳에 連行되어서 22日字로 拘束되었습니다. 그리고 23日字로 서울廳에서 바로 職位解除를 했습니다.

앞으로 措置事項에 대해서는 當該公務員에 대해서는 罷免 懲戒措置 계획이고 그 다음에 直上級者에 대해서는 行政主事가 直上級者입니다. 그리고 次上級者 行政事務官에 대해서는 방금 次官님 報告하신대로 엄중하게 경고후에 監督責任을 물어서 下向人事措置하도록 오늘 서울廳長한테 지시가 나갔습니다.

○李海瓚委員 그러면 그 사람이 授受한 뇌물이 얼마입니까?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지금 뇌물을 授受한 사실은 없고 다만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記事內容과 같습니까?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記事內容하고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李海瓚委員 본인이 記事內容과 거의 같다고 자백을 했습니까?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350萬원이라고 檢察에서 調查結果 발표가 되었습니다.

○李海瓚委員 본인이 인정하고 있습니까?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檢察結果로서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본인과는 면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李海瓚委員 제가 지난번에 資料要請을 하니까 관계된 資料가 檢察廳에 압수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도 그런 상태입니까? 언제 다시 돌아옵니까?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法院에 起訴가 되면 그 書類가 통상 行政官署에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檢察에도 종결되면 文書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李海瓚委員 書類가 돌아오면 관계된 書類를 한부씩 복사를 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문제가 저희한테 요즘에 들어오는 提報에 의하면 이런 사례가 日常化되어 있다 제가 나중에 정확한 提報로 확인되면...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産災患者들에 대한 補償金을 勞動部에서 管理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한 사례로 나오고 있는 것하고 저희한테 提報되는 사실을 종합해 보면은 거의 다반사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關係書類를 제가 보고 또 다른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綜合的으로 다시 제가 質疑過程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勞動部監査官 金龍昭 알겠습니다.

(盧仁煥幹事, 金令培委員長과 司會交代)

○李海瓚委員 또 한가지 있지요? 대아동상 문제요.

○勞動部次官 李龍俊 그것은 擔當者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나중에 報告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더 質疑하실 委員 없으시지요? 그러면 本件을 마무리하면서 勞動部에 부탁 한 말씀드립니다.

이번 調查過程에서 나타난 勞組員 採用

人事管理의 不正非理와 辦公費 및 組合員 組合費等 豫算上의 不當執行事例 등의 剔抉 措置와 오늘 委員님들의 指摘事項들을 地方 廳에 이첩하지말고 勞動部에서 직접 釜山港 運勞組의 구조적인 부조리 시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勞動部의 釜山港運勞組 調查結果報告와 이에 대한 質疑을 미치겠습니다.

8. 勞動組合法中改正法律案(李相洙議員外 70人 發議)(계속)

9. 勞動組合法中改正法律案(李仁濟·盧武鉉·鄭貞蕙議員外 57人 發議)(계속)

10. 勞動組合法中改正法律案(金炳龍議員外 34人 發議)(계속)

(16時35分)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議事日程 第7項 李相洙議員外 70인이 發議한 勞動組合法中改正法律案 議事日程 第8項 李仁濟·盧武鉉·鄭貞蕙議員外 57인이 發議한 勞動組合法中改正法律案 議事日程 第9項 金炳龍議員外 34인이 發議한 勞動組合法中改正法律案 이상 3件을 일괄해서 上程하겠습니다.

法案審査小委員長 李相洙委員 나오셔서 小委員會의 審査結果를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小委員長 李相洙 勞動組合法中改正法律案 3件에 대한 小委員會의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勞動組合法中改正法律案은 平和民主黨 統一民主黨 그리고 新民主共和黨에서 各各 1件씩 提案한 法案으로 當 小委員會에서는 1989年2月15日 2月17日 2月23日 3月3日 3月4日 3月6日 등 6次에 걸쳐 小委員會에서 小委員 全員이 參席하여 政府 關係官을 出席시킨 가운데 3個案을 眞摯하게 統合審査한 결과 各案을 統合하여 單一案을 마련하였으나 一部條項에서 民主正義黨側의 反對意思表示로 3黨合意의 代案을 提案하기로 하고 改正案 原案은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代案의 主要骨子を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6級以下 公務員의 勞動組合 組織 및 加入과 團體交涉權을 認定하였고

둘째 第三者介入禁止 除外範疇에 勞動組合의 委任을 받은 辯護士나 公認勞務士와 勞動委員會의 承認을 얻은 者를 包含하였으며 셋째 勞動組合은 設立申告를 한때로부터 成立하도록 하였고

네째 勞動組合 設立申告를 接受한 때에는 즉시 申告證을 交付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勞動組合은 매년 1回以上 總會를 開催하도록 하였고

여섯째 勞動組合 任員의 身分保障에 관한 條項을 新設하였습니다.

또 일곱째로는 勞動組合의 代表者가 정당한 理由없이 總會 또는 代議員會의 召集을 기피하는 경우와 總會 또는 代議員會의 召集權者가 없는 경우에 組合員이 主體가 되어 會議을 신속하게 召集하는 節次를 規定 하였고

여덟째 勞動組合의 任員이 없고 勞動組合 活動을 하지 아니하는 勞動組合의 解散事由를 2年에서 1年으로 短縮하였으며

아홉째 團體協約의 有效期間을 2年에서 1年으로 短縮하였습니다.

이상으로 小委員會의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內容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當 小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대로 議決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令培 小委員長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小委員長에서 報告한 內容은 勞動組合法中改正法律案이 3個黨에서 한件씩 3件이 제출되었으므로 이 3黨案을 통합 보완하여 單一案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各 原案을 本會議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그 代案을 勞動委員會의 案으로 채택해 주도록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代案에는 民主正義黨側에서 그 內容의 일부에 반대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해서 이 代案은 3黨만의 單一案이 되었다는 報告입니다.

이 審査報告內容에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仁委員 發言하십시오.

○金東仁委員 勞動組合法 改正案에 대하여 平民 民主 共和 3黨이 각기 제출하신 勞動組

合法中改正法律案은 小委員會에서 깊이있게  
심의하여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勞動組合  
의 政治活動 禁止條項의 삭제와 第三者 介入  
禁止條項을 신축성있게 改正하는등 勤勞者의  
勞動權 保障에 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改正案의 內容중에는 産業社會나  
勞動現實이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조항  
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問題點을 몇가지 말씀드  
리면

첫째 案 第8條의 公務員團結權問題는 公務  
員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特別權力  
關係에서 身分保障을 받고 있으므로 私企業  
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경우와 같은 차원에서  
勞使問題를 다룰 수가 없는 것이며 公務  
員의 보수등 근로조건 또한 豫算과 法令  
에 의하여 政治的 立法的으로 決定될 문제  
이므로 勞使間의 協約에 의하여 締結할 수  
는 없는점을 고려할 때 6남이하의 公務員이  
나 敎員등에까지 勞組活動을 擴大許容하는  
것은 國家事務의 安定的 遂行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뿐만 아니라 우리의 實情으로  
보아 시기상조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勞動組合의 設立時期를 案 第13條  
第4項과 같이 改正하여 設立申告를 한 때로  
할 경우 法的要件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勞動組合으로 認定하는 모순이 있고 未備事  
項의 補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事後에  
申告證交付를 取消해야 하는 問題點이 있으  
므로 現行規定을 維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생각합니다.

셋째 勞組任員의 身分保障規定을 案 第23  
條의 2에서 新設하고 있는바 勞動組合 任員  
의 人事에 있어 使用者가 미리 그 勞動組  
合의 同意를 얻도록 하는 것은 使用者의  
經營權에 속하는 人事權을 侵害하는 結果가  
되며 現行法으로도 勞組任員의 人事가 勞組  
運營을 저해하는 경우 勞動組合法上의 不當  
勞動行爲 第39條에 해당되므로 별도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勞組에 대한 行政官廳의 資料提出  
權 삭제 案 第30條 問題는 勞動組合이 組  
合員의 의사에 反하여 독선적으로 운영되어  
組織內에 마찰과 갈등이 심화될 경우 노조

운영의 正常化를 위해 公正한 調整者로서  
行政官廳의 干여가 불가피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行政  
官廳이 必要時 勞動組合에 대하여 경리상황  
과 기타 關係書類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할  
수 있는 法的根據는 존치시키는 것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조항들에 대하여는 한  
번 더 檢討하시어 가급적 現行規定대로 維  
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  
니다.

이래서 우리 勞動委員會가 다른 案件에  
대해서는 4黨이 合意로 했음이다하는 勞動組  
合法에 대해서는 3黨이 一方的으로 決議한  
것은 本人도 小委員會 委員의 한 사람으로  
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再檢討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提案하는 바입  
니다.

○委員長 金令培 지금 金東仁委員님의 發言  
은 결론이 再檢討를 해주기를 바란다 하는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의 의견으로밖에 소화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도 金  
東仁委員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本 委員  
會를 맡고 委員長으로서도 되도록이면 4黨間  
에 일치된 合議에 의해서 滿場一致로 처리  
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 또 그런 결과가 도  
출되도록 음으로 양으로 많이 노력도 했음  
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치가 못했습니다.

원칙 與野間에 의견의 폭이 더이상 좁혀  
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  
음이다하는 13代 國會 勞動委員會가 모든  
事案에 있어서 滿場一致로 처리를 해왔는데  
이제 처음으로 表決을 할 수밖에 없는 입  
장에 왔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점을 委員長  
으로서의 착잡한 심정으로 本 件을 表決에  
붙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8項 第9項 第10項 勞  
動組合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해서 小委員會에서  
報告한 대로 原案은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  
니하기로 하고 그 代案을 勞動委員會의 案  
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으십니까?

(있음이다 하는 이 있음)

異議있으십니까?

그러면 表決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通例에 의해서 반대하시는 委員님들...

○李台堂委員 議事進行發言이요.

○委員長 金令培 表決宣布하고 表決중인데요.

○李台堂委員 委員長님께서 결정을 그렇게 하셨으면 몰라도 우리 金東仁委員의 再考를 해주십사 하는 發言을 해서 그것은 修正案도 아니고 反對討論로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再考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表決을 하고 그 다음에 이 案件에 대한 表決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런 것이 제 個人的인 의견입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再考를 누가 해야 되느냐...

○李台堂委員 委員會에서 해야지요.

○委員長 金令培 그러니까 司會를 맡고 있는 委員長이 再考해야 될 권리와 입장도 아니고 법의 절차에 따라서 小委員會에서 合法的인 절차를 밟아서 審査結果를 報告를 지금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金東仁委員의 發言이 있었는데 이것을 再考라고 하는 자체가 表決 절차를 밟아서 처리될 수 밖에 없는 것이지 어떤 修正案이 나온 것도 아니고 再考를 해달라고 하는데 누가 再考하느냐 이것이에요.

○李台堂委員 小委員會를 다시 소집해서 再考할 수 있는 것이지요.

○委員長 金令培 그렇게 하려면 野黨側에서도 그것을 받아 들어서 小委員會로 다시 附議한다고 하는 議決을 거치야만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李台堂委員 제 얘기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議決을 거치자 하는 議事進行發言이올시다. 小委員會에 다시 附議하자고 하는 議決을 거친 다음에 이 案件에 대한 贊反投票를 하자는 것이 제 議事進行發言의 요지입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表決을 해 봐야 되겠네요.

○韓光玉委員 委員長! 지금 우리가 會議를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慣例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案이 贊反討論할 수가 있

니다. 法案이 常委에 올라오면은... 그래서 아마 金東仁委員님께서 하신 것은 이 法案에 대해서 反對討論으로 나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니까지나 再考를 해달라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면 再考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表決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提起하는데 그것을 조금 제가 볼 적에는 慣例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번 물으나 한번 물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慣例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金東仁委員님의 發言을 再考라고 하는 慣例없는 내용에 붙이는 것보다는 反對討論으로 간주를 해서 贊反의 投票에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李台堂委員 그 討論을 좀더 하고 싶은데요. 委員長님이 金東仁委員의 再考要請을 묵살한다 또는 再考할 수 없다고 宣言한 후에는 이 法案에 대해서 贊反投票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저도 딱딱하게 느낌이 가지시더라도 原則적인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議事進行上 나중에 李台堂委員께서 말씀하신 여기서 처리를 맡고 다시 法案審査小委員會에 회부하자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動議案을 提出해서 이렇게 議案으로 처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再考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됩니까? 의견이 아닙니까? 그럼 하나의 의견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國會法 어디에 그런 것을 어떻게 表決하고 처리합니까?

그래서 委員長으로서는 의견으로서 밖에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法에 의해서 議事進行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委員長이 뭘 잘못된 양 얘기를 하시니까...

○李台堂委員 잘못된다고 얘기한 것 없어요.

○委員長 金令培 그러니까 딱딱하게 들리실런지 모르지만 原則적인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李台燮委員 委員長은 북살한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까.

○委員長 金令培 북살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나의 의견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動議案을 提出하면 그것이야 議案으로 처리해야지요.

○李台燮委員 첫번째 投票를 하자 하나가 하는 얘기에요.

○委員長 金令培 저도 착잡한 심정으로 처리하는 중입니다.

○李台燮委員 합시다.

○委員長 金令培 예.

그러면 小委員會案에 反對하시는 委員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舉手表決)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贊成하시는 委員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舉手表決)

내려 주십시오.

贊成이 8名 反對가 5名으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1. 勞動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李相洙議員外 70人 發議)(계속)

12. 勞動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盧武鉉·李仁濟·鄭貞薰議員外 57人 發議)(계속)

13. 勞動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金炳龍議員外 34人 發議)(계속)

(16時56分)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議事日程 第11項 李相洙議員外 70인이 發議한 勞動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 議事日程 第12項 盧武鉉·李仁濟·鄭貞薰議員外 57인이 發議한 勞動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 議事日程 第13項 金炳龍議員外 34인이 發議한 勞動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 이상 3件을 계속해서 일괄 上程합니다.

本 法案은 지난 2月28日 第4次 勞動委員會에서 議事日程 第10項 第11項 第12項의 勞動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法案審査小委員會 審査結果報告를 3件의 改正案이 平和民主黨 統一民主黨 新民主共和黨 3個 政黨으로부터 各 1件씩 提出되었으므로 改正案內容을 통합하여 單一案으로 마련하고자 原案을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代

案을 마련했으므로 이를 勞動委員會의 案으로 提案한다는 報告였습니다.

그런데 이 代案에 대해서 民主正義黨側에서는 反對意思를 표명했으므로 이 代案을 平和民主黨 統一民主黨 그리고 新民主共和黨의 3野黨의 單一案이 된 것입니다.

이 小委員會의 報告內容에 대해서 혹시 質疑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瓚熙委員 發言하십시오.

○安瓚熙委員 野黨에서는 元老委員께서 나와 계신데 제가 勞動委員會에 오면서 이와 같은 表決없는 常任委員會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國會에서 宣誓할 때도 生産的인 國會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조그마한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나옴에 여기에 나와서 表決하는데 임했음이다마는 오늘과 같이 착잡한 심정은 없습니다.

李相洙 審査小委員長으로부터 報告된 勞動委員會法改正案의 內容中에는 公益委員會의 議決方法을 改善함으로써 判定機能의 公正性을 保障하는 등 發展的인 측면도 있으나 效率性이나 專門性은 다소 문제가 있고 제가 너무 지나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으나 남의 權利를 침해하는 경우가 다소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案 第6條第3項에서는 中央勞動委員會 公益委員을 위촉함에 있어 國會所管 常任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憲法上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憲法에서 國會의 同意를 얻어 임명토록 되어있는 國務總理 監查院長 大法院長 등을 除外한 모든 公務員의 任命權은 大統領의 固有權限에 속하며 勞動委員會는 政府組織法 第4條의2의 규정에 의한 合議制行政機關입니다.

이와 같은 勞動委員會의 公益委員 任命에 있어 國會所管常任委員會의 同意를 얻도록 하는 것은 三權分立의 基本原則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行政委員會의 委員 위촉에 있어 國會所管 常任委員會의 同意를 얻도록 하고 있는 先例를 찾아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常任委員會의 同意가 곧 國會의 意思라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 國會法上의 문제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案 第7條2에서 常任委員會를 當該勞動委員會의 公益委員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勞動委員會의 常任委員은 別定職公務員이므로 國家公務員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소속장관인 勞動部長官의 제청으로 大統領이 任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공익위원은 非常任인 관계로 大部分이 教授나 判·檢事 辯護士 등 자기의 직업들 갖고 현직에 종사하고 있어 公益委員중에서 常任委員會를 선출하는 경우 現職을 포기해야 하는 問題가 있어 常勤 適格者를 확보하는데 많은 制約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案 第8條와 같이 委員長과 副委員長을 常任委員中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것은 第7條의2 常任委員選出方法과 상호 연관을 갖게되므로 常任委員選出 方法에서 지적인 문제점이 그대로 연장되기 때문에 적격한 委員長과 副委員長 선출에 많은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改正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 보다는 좀더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를 하여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黨에서도 지난번 選舉遊說때에 勞動審判所問題를 公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토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代案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法案 通過한 것으로 보아서 분위기가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제가 代案問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재삼 부탁드릴 것은 다시한번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金令培 지금 安委員님 말씀은 小委員長의 答辯을 요하는 부분은 없고 다만 再考 요청이시지요?

○安瓊照委員 예.

○委員長 金令培 그러면 盧武鉉委員 發言하십시오.

○盧武鉉委員 本委員은 贊成討論을 길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오랫동안 小委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검토되었던 문제라서 贊成討論을 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만 하고 아울러서 약간의 條項에 관해서 修正動議를 하고자 합니다.

이 法에 있어서 문제가 조금 된다고 보여지는 것은 본시 第3條2項에 관해서 代案은 現行法上 勞動部를 서울特別市로 改正할 것으로 代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勞動委員會라는 行政委員會가 소속할 部處에 관한 규정인가 아니면 지역에 관한 규정인가 하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된것 같은데 이를 그대로 둘 경우 勞動委員會의 政府組織法上의 管轄部署가 조금 不明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代案에 있어서의 서울特別市를 현행대로 勞動部로 다시 수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勞動部 또는 서울特別市라는 용어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行政組織上의 管轄部署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本委員會가 行政組織上 어디에 소속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제기에 대한 좋은 해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第3條2項은 현행대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 다음에 附則 第2條 經過措置에 관해서 小委員會에서 마련한 代案을 보면 이 法施行 당시의 各級 勞動委員會의 委員長과 委員은 이 法에 의한 勞動委員會의 委員長과 委員으로 보고 그 任期는 종전 任期의 殘任期間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왕에 임명된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 可及的이면 任期를 보장한다는 취지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各級 勞動委員會마다 任期가 각기 다르고 따라서 選出方式이 다 다른 委員이 한委員會에 혼재하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심하면 91年9월에 이르기까지 새法에 의해 選出된 委員과 舊法에 의해서 선출된 委員이 함께 委員會를 구성하게 되고

함께 選舉나 投票을 하게 되는 조금 불합리한 결과에 도달되고 그렇게 될 경우 業務의 원활한 처리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代案의 附則 2條를 다음과 같이 바꿀 것으로 제안합니다.

附則 2條 經過措置는 이 法施行前에 임명된 各級 勞動委員會 公益委員의 任期에 관하여는 이 法施行日로부터 中央勞動委員會 公益委員은 1月 地方勞動委員會 公益委員은 2月까지로 한다 이렇게 넣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金炳龍委員 發言 잠깐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예, 金炳龍委員 發言해 주십시오.

○金炳龍委員 勞動委員會法은 우리 小委員會에서 여러차례 검토를 하면서 與野間에서 양보를 하고 또 남측도 시키고 이래서 많은 진전을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6條3項의 公益委員을 大統領이 任命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勞動常任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서 中央勞動委員會의 委員長이 任命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異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확실하게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또 國會 常任委員會에서 同意를 얻은 것이 과연 適法한 것이냐 하는 문제도 法理論上 누가 뚜렷한 어떤 代案을 제시를 못하고 있기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더 시간을 가지고 4黨 幹事間에 서로 協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委員長 金令培 알겠습니다.

지금 民正黨側에서는 正式動議는 안 하시고 再考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保留지요. 그런 의견이 나왔고 또 盧武鉉委員께서는 修正案을 제안하셨고 또 新民主共和黨의 金炳龍委員은 이미 잠깐 停會해서 幹事會議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修正案問題도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保留를 시켜 달라하는 문제도 같이 의논할겸 해서 金炳龍委員의 發言을 채택해서 잠깐 停會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瓚熙委員 停會를 했다가 제가 修正案을 다시 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金令培 그것은 자유입니다. 權利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잠시 停會하겠습니다.

(17時13分 會議中止)

(18時20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令培 會議을 續開하겠습니다. 停會前에 논의되었던 法案審査小委員會에서 報告된 勞動委員會法中改正法律案은 野黨側에서도 修正案을 提議하셨고 또 與黨인 民正黨側에서도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으니 留保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意見提示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共和黨側의 提議에 따라서 幹事會議에서 이 문제를 놓고 여러가지 깊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與野間에 同法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오늘 會議에서는 처리하는 것을 留保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리하지 아니하고 留保해 두는데 異議없으시지요?

(異議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盧武鉉委員 異議는 없고 절차상 다음어두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幹事會議에서 유보하기로 합의가 됐으니까 그전에 제가 提案한 修正動議案은 좀더 검토하고 다듬기 위해 撤回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令培 제가 敷衍說明한 것은 그러한 의미도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留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 勞動關係法改正에관한請願(金東仁議員의 紹介로 提出)

(18時24分)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議事日程 第13項 勞動關係法改正에관한請願을 上程합니다.

法案審査小委員長 나오셔서 請願의 審査結果에 관한 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小委員長 李相洙 勞動關係法案審査小委員長 李相洙입니다.

勞動關係法改正에관한請願은 請願審査小委員會에 繫留中에 勞動關係法審査小委員會가 構成되면서 關係案件 審査와 併行하여 審査하도록 當 小委員會에 回附된 請願입니다.

當 小委員會에서는 請願趣旨 說明은 그 要旨 書로 代替하고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은 후 勞動組合法 勞動爭議調整法 勤勞基準法 勞動委員會法 男女雇傭平等法等 勞動關係法改正案 審議時에 請願의 要求內容을 充分히 參考하고 그 一部를 改正法案에 反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請願은 그 要求事項이 關係法案 審議에 많은 參考가 되었다고 보므로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同意하였습니다.

이상으로 勞動關係法改正에 관한 請願의 審査報告를 마칩니다.

더 자세한 內容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參照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令培 지금 委員長의 審査結果報告를 들었습니다.

이 審査報告內容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으시면 勞動關係法改正에 관한 請願은 그 請願에서 요구하고 있는 內容들이 法案審査 小委員會에서 關係法案審議時에 충분히 참고 또 그 內容의 일부가 關聯法案이 반영되었다고 보므로 이 請願은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으십니까?

(「異議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議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 15. 長期勞使紛糾의 解決을 위한 紛糾當事者의 意見聽取의 件

(18時27分)

○委員長 金令培 다음은 議事日程 第14項 長期勞使紛糾의 解決을 위한 紛糾當事者의 意見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本案은 議事日程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國會法에 의하면 委員長이 幹事와 協議해서 결정 발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事案이 常任委員會에서 平常 처리되는 事案이 아니라 勞使紛糾에 있어서의 勞使當事者들을 불러서 그 경위를 묻고 그 解決策을 강구하고자 하는 특별한 그 事案입니다. 그런 까닭에 合意된 內容을 발표드리면서 여러 委員들의 同意를 얻어두는 것이 여러가지 의미에서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內容을 말씀드리면 이를 위한 本 勞動委員會는 돌아오는 10日 11日 兩日間으로 하고 該當事業體는 現代重工業 「모토롤라코리아」 三星重工業 豐山金屬 大宇精密 이렇게 5個 事業體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敷衍說明을 조금 드리면 당초에 現代엔진도 포함이 되었음다다만 며칠 전에 現代엔진의 勞使紛糾는 해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對象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 듭니다.

그러면 각각 事業體에 있어서 自進出頭要 請하는 對象은 어떻게 하느냐 이 점은 當該 企業體의 會長과 代表理事 社長 또 勤勞者側은 勞動組合을 代表하는 組合長 또는 기타 幹部 이렇게 하기로 하고 또 勞使問題뿐만 아니라 勞勞紛爭이 있습니다.

그런 事業場에는 兩側 勞動組合을 代表하는 또는 양쪽의 勤勞者들을 代表하는 사람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人選內容을 發表하겠습니다.

現代重工業의 使用者側 代表는 會長 鄭夢準 代表理事 朴永郁 勤勞者側 代表 여기는 勞組가 들입니다. 委員長 서태수 또 한 委員長 이원건 그런데 이원건 委員長은 手配 中입니다. 그래서 이원건씨에게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 나올 수가 없는 사정이라고 할때 그 이원건 委員長이 代理委任狀을 지참해서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토롤라코리아」 여기는 社長 鄭寅鍾 또 勤勞者側은 委員長은 拘束中이기 때문에 副委員長 허정석 그 다음에 三星重工業 會長은 그냥 名譽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代表理事 副會長 崔寬植 代表理事 社長 蔣慶煥 勤勞者側 여기 역시 勞勞紛爭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委員長 김무연 다른 한쪽 委員長 위재학 다음에 豐山金屬 使用者側 代表 會長 柳纘佑 代表理事 社長 金尙憲 勤勞者側 代表는 委員長 副委員長이 모두다 拘束中입니다. 그래서 權限代行 순현웅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大宇精密 여기는 代表理事만 있습니다. 代表理事 柳基範 勤勞者側 代表는 委員長 副委員長 拘束中입니다. 그래서 事務局長 윤명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原則적인 것을 정하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여섯業體에 대해서 聽聞會를 통해서 불리 따져보자 이런 提議였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常委에서 따져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 聽聞會를 해보자 이렇게 合意가 되어서 條件이 붙었습니다. 그것은 이 常任委員會에 強制性을 띤 出席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本人 自進出頭形式이 되는데 그렇게 自進出頭要請을 해서 出席하지 아니하거나 또 出席한 다음에도 答辯이 불성실하거나 또 그 紛糾를 해결하는 성의가 없다고 판단될때 이 세가지 조건입니다. 그럴때에 當該者를 聽聞會를 개최해서 正式召喚해서 따진다 이렇게 合意가 됐습니다. 이렇게 4黨幹事會議에서 合意된 내용을 여러 委員님들께서 追認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委員長으로서 發表한 것은 與野間에 4黨이 완전히 머칠을 두고 熟議한 뒤에 合意한 結果입니다.

異議없으시지요?

(異議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議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李海瓊委員 發言하시지요.

○李海瓊委員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하시는 데 죄송합니다. 다음이 아니고 지금 長期紛糾가 있는데 대해서는 10日 11日 常任委員會에서 質疑를 통해서 紛糾解決을 위해 노력하도록 合意가 됐고 地下鐵公社와 關係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地下鐵公社는 勞使間에 合意가 된 事項을 이행하지 않는 과정에서 지금 1千萬市民의 발을 묶는 상당히 중대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勞使間에 合意된 團體協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問題點이고 두번째는 地下鐵 勞使紛糾에 대해서는 지난번 國政監査에서 監査를 하면서 團體協約을 지키겠다고 地下鐵公社 社長께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組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國會에 대해서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이점과 關係해서 本委員會에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고 또 懸案의 중대성을 봐서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地下鐵公社의 최근의 罷業과 關係해서 國會常任委員會 本委員會에서

調査班을 구성해서 조사를 해서 지난 國政監査에 대한 약속을 이행을 하고 紛糾를 해결하도록 할 수 있게끔 調査班을 구성해 주실 것을 正식으로 提案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地下鐵勞使紛糾真相調査班 構成을 動議를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令培 그러면 再請있습니까?

(再請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三請있습니까?

(三請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動議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安瓊熙委員 發言하십시오.

○安瓊熙委員 地下鐵問題는 昨年度에 國政監査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아침에 行政分科에 잠깐 들렀더니 行政委員會에서 그 문제를 오늘부터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調査團 나가고 行政委에서 하면 중복이 되어서 오히려 혼란이 올 것입니다. 社長은 한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行政委員會에서 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行政委員會도 다 같은 委員님들인데 우리가 가서 겹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委員長 金令培 韓光玉委員 發言하십시오.

○韓光玉委員 韓光玉委員입니다.

최근에 서울 地下鐵 勞使紛糾가 社會的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사실상 이 문제는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 地下鐵 勞使紛糾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 當委員會에서 國監을 통해서 이미 勞使紛糾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했고 또 當該 機關長인 서울市長으로부터의 확고한 答辯을 들었고 또 그당시 勞使紛糾 현장의 勞組側과도 절충을 해서 아마 여기 우리 勞動委員들께서 상당한 고생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정도 잘 해결이 될 줄 알고 이제까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문제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서 다시 提起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市當局에서 勞組側과의 合意事項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야기가 되었고 또 勞組側에서는 도저히 合意事項을 正常的인 方法으로는 이행

을 시킬 수 없다 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시켜서 無賃乘車라고 하는 非正常的인 방법까지도 동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勞使間의 紛爭이기 때문에 물론 行政委員會에서 또 나름대로의 調査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同 紛糾問題는 本 委員會에서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했고 또 현재도 勞使間의 문제이기 때문에 當 委員會에서 調査團을 구성하는 것이 결코 해롭지 않다. 다시 말해서 꼭 當 委員會에서는 이 문제를 관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當 委員會에서 使命感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을 짓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한편 생각하게 되면 같은 國會인데 중첩이 될 可能性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勞動委員會에서 이러한 큰 문제가 야기되어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他 委員會에서 활동하는 것만 지켜보고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내 일이라도 복잡한 문제가 아니니까 事件現場을 가서 勞使紛糾의 遠因과 近因을 더 심층 분석해서 빨리 紛糾를 수습하는데 當 委員會에서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지금 존경하는 安委員님 얘기도 우리가 있습니다마는 같이 委員會의 調査團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令培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구성하는 原則은 滿場一致가 되겠습니다. 構成方法은 委員長과 4黨 幹事會議에 委任해 주시도록 이런 내용으로 異議없으시지요?

(異議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한가지 주지해 드릴 것은 法案審査小委員會 여러분들이나 委員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法案審査小委員會에 回附된 法案이 總 22件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6件을 審査해서 그 結果를 本委員會에 報告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6件의 法案이 小委員會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 13代 國會라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새로운 法으로 改正을 신

속히 처리해야 된다 하는 사명을 띤 國會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는 6件의 法案을 審査하기 위해서 法案審査小委員會는 이번 臨時國會 休會中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法案審査하는데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小委에서 法案審査가 끝나면 끝나는 대로 本 勞動委員會를 소집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會議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8時48分 散會)

○出席委員

金 令 培	金 東 仁	南 載 熙
盧 仁 煥	安 瓊 熙	李 康 熙
李 台 燮	鄭 宗 澤	李 相 洙
李 海 瓚	韓 光 玉	金 在 光
盧 武 鉉	李 仁 濟	金 炳 龍
金 鎔 采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卓 英 鎭
立 法 審 議 官	宋 芳 燮

○出席國務委員

勞 動 部 長 官	張 永 喆
-----------	-------

○出席政府委員

勞 動 部	
次 官	李 龍 俊
企劃管理室長	鄭 東 佑
勞 政 局 長	具 然 春
產 業 安 全 局 長	尹 錫 春
勤 勞 基 準 局 長	金 基 德
職 業 安 定 局 長	金 濟 憲
職 業 訓 練 局 長	禹 誠 熙
勞 動 保 險 局 長	姜 斤 熙

○政府側參席者

勞 動 部	
監 查 官	金 龍 昭
雇 傭 管 理 課 長	宋 孟 鏞